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상징천황제의 전개과정과 정치성에 관한 연구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 전공

김 선 희

문학석사 학위논문

상징천황제의 전개과정과 정치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신 종 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 전공

김 선 희

김선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25일

주 심 장 상 언 (인)

위 원 신 종 대 (인)

위 원 사토노리코 (인)

목 차

※Abstract ····· iii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법 ····· 2

Ⅱ. 본론 ····· 4

1. 전후 천황제 인식의 전개과정 ····· 4

1) 전후 처리과정에서의 상징천황제 ····· 4

(1) 미 점령군의 대천황 정책 ····· 4

(2) 전후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본국내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 ····· 12

2) 60, 70년대의 상징천황제 ····· 19

3) 80년대 이후의 상징천황제 ····· 24

4) 국제정세의 변화와 천황제 ····· 33

2. 상징천황제에서의 천황의 지위와 정치성 ····· 35

1) 상징천황제에서의 천황의 법적지위 ····· 35

2) 상징천황제의 정치성과 문제점 ····· 40

(1)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이용 ····· 40

(2) 상징천황제의 강화내용 ····· 46

(3) 천황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 52

3) 헌법개정문제 ····· 53

(1) 헌법개정논의의 전개과정 ····· 53

(2) 헌법개정론의 내용 ····· 59

Ⅲ. 결론 ····· 61

참고문헌 ····· 6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 Study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of Japan

by Seon Hee Kim

Department of Japanese Graduate School
B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According to the external influence caused by Japanese defeat, even the existence of the emperor system itself as well as its divinity had been in a most precarious situation. Even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numerous plots and fabrications of the America and the ruling class of Japan under the occupation policy of America , the Symbolic Emperor System could be stably established.

The interest of America, which was to block the infiltration of Communism into Japan during the Cold War, the effort of Japanese ruling class, which was to create new images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rough its continuance and the emperor's exemption of the war responsibility whatever they pay, and the agreement of the Japanese people, who were willing to share the hardship, were the most important bas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and the emperor could naturally escape from the responsibility.

During the 60s' and 70s', mainly through the mass communication, the image of the emperor could be changed into democratic and modern one by establishing new image for the emperor and his family and widely advertizing his economical and peaceful image. Through this change of process, the emperor and the Symbolic Emperor System apparently seems not to be relative to the political significance.

Because the conservative regime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reinstatement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on the basis of its

establishment among the people, It is thought that a series of the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National Foundation Day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elebration Day Law, the Centennial of the Meiji restoration in 1968,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mperor's reign, the enactment of reign name in 1979,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mperor's reign, is being taken for the frame work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the emphasis of the continuity with the prewar days.

On the other hand, with the 90s' of Hirohito's death, though Japanese conservatism is more noticeable than the war end with a rise as a global economic power, there is no explicit movement for the strength of the authority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and some of the Japanese tends not to give much meaning to the national unification fo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However, with the recent rise of the Chinese threat, the possibility that the right-wing conservatives take this opportunity to use the emperor as the core of the Nationalism has been increasing.

Along with the recen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peace, the movement for the strength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can be also functioned as a symbol of the national division rather than that of the national unification. Because the more that the opinion that the movement for the strength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rough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role is illegal in the national affairs except the admitted in the Constitution, the more the System can come to the fore as a symbol of the division but not as that of the unification.

It is thought that the more relative the emperor is to political activities, the bigger the risk as a symbol of the division but not as that of the unification.
But it is certain that the strength of the emperor's political activities is still being kept eye on.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메이지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신권적 통치권자로 규정했던 데 반해, 전후의 일본 신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것을 상징천황제라고 한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립에는 미국의 대일점령방침, 국제여론, 일본정부의 자세, 일본 국내의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쟁책임과 관련한 천황제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민에게 있어서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메이지정부 이래로 천황을 신격화한 이데올로기적인 통합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황제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신적 권위를 발동할 수도 없는' 지위로 격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상징'이라는 개념이 갖는 애매성으로 인해 때로는 '상징'이라는 의미가 무제한으로 확대 해석 되고 있는 지금, 현대 일본에서 상징천황제가 갖는 기능을 돌아보는 일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천황의 전쟁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천황제를 통해 그것이 연면성을 유지하게 된 원인,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를 예상해보며 여전히 국민국가의 형성 원리로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쟁점화를 회피하고 실제적으로는 은연중에 갖가지 다양성을 억제하는 선별과 배제의 원천으로 기능함으로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상징천황제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권력의 지배원리와 천황제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연구를 집중한다. 한편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폐지론부터 옹호론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천황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상징천황」 제도가 헌법개

정문제와 맞물려 잠재적으로는 점점 커다란 논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한편으로는 천황제 강화 움직임이 천황을 국민통합의 상징이 아닌 오히려 국민 속의 분열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헌법에 명시된 천황의 국사행위 이외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통한 천황제 강화 움직임이 위헌상태라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논의 될수록 상징천황제가 국민통합의 상징이 아닌 불통합의 상징과 같은 면이 부각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후 일본에서 어떤 사회정치적 배경에서 천황제 강화 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며, 천황제 강화에 의한 국민 통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에는 상징천황제를 통한 국민통합에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법

1) 선행연구

선행연구로는 박진우의「前後日本의 歷史認識과 象徵天皇制」[1], 이상훈의 「象徵天皇制의 딜레마 -국민 통합인가 국민 분열인가-」[2], 김용민의「日本天皇制에 關한 硏究-天皇 位相의 歷史的 變化를 中心으로-」[3]등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후의 상징천황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하였으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천황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어떻게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개정문제와 맞물려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자 한다.

---

1) 박진우 (1998)「前後日本의 歷史認識과 象徵天皇制」『일본역사연구』 日本史學會.

2) 이상훈 (2003) 「象徵天皇制의 딜레마-국민 통합인가 국민 분열인가-」『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3) 김용민 (2001)「日本天皇制에 關한 硏究 ; 天皇 位相의 歷史的 變化를 中心으로」경희대학교 대학원.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기초로서 신권(神權)천황제와 전후의 상징(象徵)천황제의 대조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상징천황제의 등장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양자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그 연속성이 과거청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2) 본 연구테마는 현재진행중인 것으로서 시사적인 사실에 유의하여 제 정치세력의 정강과 언론 보도 등과 그것의 비판에도 함께 접근한다. 또한 전후부터 현재까지는 비교적 60여년에 불과하므로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기별로 각 정치세력 등의 태도변화를 분석해 본다.

(3) 천황제옹호론과 비판론의 논리적 근거를 예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할 것인가를 연구하며,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천황제가 어떤 맥락에서 검토될 것인가를 각 정치세력들의 강령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추세가 일본의 천황제에도 변화에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유의하고, 국가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제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고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후 천황제 인식의 전개과정

1) 전후 처리과정에서의 상징천황제

(1) 미 점령군의 대천황 정책

1945년 패전시기 일본은 천황제 존속을 위한 국체[4]호지를 위해 7월26일 발표된 포츠담선언[5]을 즉각적으로 수락하지 않고[6] 히로시마(8.6)와 나가사키(7.28)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야 "(포츠담)선언은 천황의 국가통치의 대권의 변경이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는 조건하에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국 측의 회답은 "항복의 시점부터 천황 및 일본정부의 국가통치권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종속되어야 한다(subject to)." , "(중략…)일본국의 최종적인 통치형태(The ultimate form of[the] government of Japan)는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 일본정부는 이 회답을 놓고 다시 논란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천황 히로히토가 "회답문의 문의(文意)를 통해, 상대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신념과 각오라며, 국체호지(國體護持)가 담보되었다는 실제적인 문의와 다르게 희망 섞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포츠담선언의 수락이 결정되게 되었다. 즉, 연합국 측의 회답에 대해 '종속한다'라는 의미인 'subject to'

---

4) 이설(異說)이 있으나 헌법학상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주권의 담당자(귀속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국가형태를 국체라고 한다. 즉 주권이 군주에 속하고 있는 국가를 군주국(체)이라고 말하고, 국민에게 속하고 있는 국가를 공화국(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국체는 국가를 분류하는 경우에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개념이다. 반면에 주권의 행사방법에 따른 분류를 정체라고 할 수 있다.

5) ①군국주의 배제 ②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강화 ③ 기본적 인권의 존중 ④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평화적 책임정부의 수립 등의 요구

6) 스즈키 간타로 수상은 7월 28일 연합국측의 최후 통첩에 대해 묵살하고 전쟁에 매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 중 묵살하다의 영어표현이 ignore가 아니라 reject로 해외에 타전되어 일본에 의해 정면 거부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서현섭 (1997)『일본인과 천황』고려원 p.236.

를 '제한 밑에 두어진다'라고 의역하고, '최종적인 일본의 통치형태'라는 의미인 'The ultimate form of[the] government of Japan'을 '최종적인 일본의 정부형태'라고 번역하여, 천황제를 포함하는 '국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회피함으로서 '국체유지'는 담보된다고 주장하였다.[7]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정부가 최후의 일선으로 사수하려고 하였던 것은 국체의 호지였다.[8] 포츠담선언이 천황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전쟁 중에 전해진 연합군의 패전 후 일본처리 정책의 여러 주장 속에는 군국주의를 일소하기 위해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론이 유력했었다. 그러므로 항복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때문에 천황제의 폐지가 요구된다면, '일억옥쇄'를 할망정 전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의 일본정부 특히 군부의 생각이었다.[9] 때문에 점령통치가 시작되면서 전쟁의 최종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천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내외의 관심사였다. 천황을 전쟁범죄자로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고 천황제를 폐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군사화만큼이나, 점령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 문제는 일본의 국가 체제나 진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0] 이렇게 대일 처리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천황이라는 존재[11]에 맞춰지게 된다.

미군정의 대일정책은 '국무·육·해군 3성 조정위원회'[12]의 하부기구로 극

---

7) 일본인의 충성심에 비추어,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우리 국체의 大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므로 국체호지는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것. 김창록 (1994)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 논문 p.187.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8) 『일본의 사상』 한길사 pp.89~90.

8) 김창록(2000) 「일본의 근현대 천황제에 관한 법사학적고찰」 『법사학연구』 Vol.22 No.1 한국법사회학회 p.187.

9) 伊藤正己(1983) 구병삭 역 『현대일본국헌법론』 법문사 p.30.

10) 한상일(1997) 『일본전후정치의변동』 법문사 p.31.

11) 1941년 제2차세계대전 개전 이후 미국에서의 천황제에 관한 논의는 심리작전의 일환으로 비롯되었다. 여기서 천황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었다. 하나는 천황에 대한 공격이 극단적인 군국주의의 특징을 배제하고 군국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연합국에게 있어서 천황제는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가장 빠른 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42년 9월 14일의 라이샤워 각서이다. 여기서 라이샤워가 일본패전 후 천황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전쟁 종결후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있어서 귀중한 아군, 또는 괴뢰로서 도움이 되도록 천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쟁에서 천황이 상처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대일 심리작전에서의 천황에 대한 취급의 전형이 되었다.

12) 미국 정부 내 삼성조정위원회(SWNCC) 산하의 극동소위원회에서 수립된 기본정책이 삼성조정위원회

동문제를 다루기 위해 1945년 6월에 설치된 '극동소위원회'가 입안한 「SWNCC-150-2」와 「SWNCC-150-3」를 거쳐 「SWNCC-150-4」로서 정식 채택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수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천황제'를 포함한 기존의 일본정부 및 기관들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를 통하여 점령정책을 집행한다는 '간접통치'의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간접통치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천황제의 처리문제, 즉 천황제를 이용한 간접통치의 방법은 '전후계획위원회'(Post-War Program Committe: PWC)의 정책문서 가운데 '천황제'(CAC-93e, PWC-116d)라는 문서를 통해 그 논의 과정이 확인된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체계적인 천황제 정책안은 '전후계획위원회' 문서뿐으로 이 PWC 문서의 권고가 1945년 8월22일 결정된 SWNCC-150-3에 받아들여져, 약간의 문장 수정과 정리 작업을 거쳐 9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대일 점령 초기의 대 천황제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분석과 정책 시안을 동반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는 1944년 5월9일 PWC-116d[13]가 유일한 것이었다. 이 PWC의 천황제에 대한 분석[14]은 천황제의 전면적인 폐지는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천황과 군국주의와의 제도적인 연관을 어떻게 단절하고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5] 이 문서는 천황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천황이 전혀 대표권을 갖지 않는 경우와 대표기능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대표기능을 인

의 심의·결정 과정을 거쳐 국무성에 전달되면, 국무성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연합군 사령부가 주일점령군사령부에 하달하는 방식이었다.

13) PWC-116d, CAC-93e라는 번호를 가진 "일본-정치문화-천황제"라는 제목의 문서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고델 헐과 전 주일대사관의 국동문제국장 그루(Joseph C. Grew)가 중심이 된 '전후정책위원회(PWC)'가 작성한 것. 오에 시노부, 양현혜·이규태역(2001)『야스쿠니신사』소화 p.36.

14) "일본인은 현재 천황에 대하여 거의 광신적이고 헌신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외부로부터 천황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일본인의 현재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일본 국민의 의지에 반해 단순히 현 천황을 폐위하려는 것은 일본인이 천황제를 믿고 그것을 호지하려고 결심하는 한 어려울 것이며 또한 법률로 그 존재를 말살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15) 전게주 13)의 책 pp.35~38.

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을 분석하여 천황제 처리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① 천황일가를 비교적 호위하기 쉬운 지방에 연금하고 될 수 있는 한 원수 대우를 한다.

② 군정 당국은 포고에 의해 천황의 입법 및 통수권에 관한 헌법 조항을 정지하고, 점령행정에 협력하는 일본 관리를 최대한 이용하고 상당 부분의 점령행정 사무를 일본인에게 위임할 것.

③ 천황제를 이용한 군정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천황제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지시킨다. 다만 이 경우에 사전에 의사표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한다.

④ 천황이 도주할 경우 군정의 민정관에 의한 직접군정이 시행된다.

⑤ 점령군이 천황을 처우할 때 일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점령군은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한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정치적 발언 및 기타의 자유로운 토론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이 같은 대일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연합국 내부의 반대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일(對日)정책에 대한 강·온 양파의 대립이 존재했다. 쟝지에스(將介石)의 정치고문을 역임했던 라티모아(Owen Lattimore)를 중심으로 한 중국파는 일본 군국주의에 있어서의 '천황제'와 재벌의 책임을 맹렬히 지적하고 이의 철저한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駐日대사를 역임했던 그루(Joseph C. Grew)를 중심으로 한 일본파는 군국주의의 주범을 일부 관료 정치가로 보고 이들 이외의 天皇·재벌·정치지배층을 평화주의자로 파악하였다.[16]

패전을 전후한 시기의 국제여론은 천황 및 천황제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어서 미국에서 1945년 6월 초순에 시행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해야한다는 입장이 70%였다. 중국에서도 천황 개인은 전범이며, 천황제는 일본군국주의의 기반이므로 폐

16) 이상봉 (1999)「일본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21세기 정치학회보 』Vol.9 No.1 p.322.

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그 밖의 연합국-영국, 소련, 호주 등의 정부 및 국민들이 입장도 대체로 천황은 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 전쟁책임을 지고 재판부에 회부 되어야 하며, 천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국민의 여론은 절대적으로 천황제 존속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1945년 12월 23일 日本週報에 의하면 천황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95%에 달했으며, 1946년 5월 27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에 실린 조사결과도 천황제 지지가 85%였다. 패전 후 처음으로 실시된 1946년 총선을 보면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천황제 수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천황제 수호에 대한 의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본을 단독 점령한 미군정의 상황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즉 미군정은 천황에 대한 일본 국민의 높은 지지로 비추어 볼 때 천황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점령 당국이 추진하는 개혁과 민주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지를 점령통치에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천황은 점령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초에는 천황의 항복명령을 받은 군대가 별다른 저항 없이 무장해제에 응한다던지, 천황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위광이 떨어지지 않는 점 등 천황의 위력을 경험한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맥아더가 1946년 1월 25일 워싱턴에 보낸 전보에서 “천황은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따라서 그를 파괴하면 일본은 와해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천황을 전범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주장한 의견에서 잘 나타난다. 결국 미국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히로히토(裕仁)를 전범으로 기소하거나 퇴위시키지 않고, 천황제를 존속시

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미국이 초기 대일 정책에서 취한 방침은 일본 국민에 대해 천황이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천황이 점령군 최고사령관에게 복종한다는 구체적인 정치 형태를 통해서 인식시키는 것, 일본국민에게 천황제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등으로 천황의 신격적 존재로서 절대적 지위의 허위를 벗기는 작업이었다.[17] 즉 일본천황에 대한 신성의 존재로서의 해체와 더불어 천황제의 제도적 토대 해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비군사화·민주화 조치가 취해진다. 1945년 9월27일 천황은 스스로 총사령부 본부로 맥아더를 찾아갔을 때[18] 승자와 패자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공개하고[19], 1945년 10월 4일에는 이른바 '인권지령'을 통하여 천황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였으며, 천황제 국가를 뒷받침하였던 치안유지법체계와 기구의 전면적 해체와 10월 15일 천황군인 육해군의 해체완료, 10월22일에는 '일본의 교육정책에 관한 관리정책'을 공포하여 군국주의 및 국가주의적인 교육을 금지시키는 것 등이다. 또한 11월 15개 재벌의 재산동결과 해체, 11월 18일 '황실재산 동결지령', 12월 15일에는 '신도지령'을 공포하여 국가와 신도를 분리하였으며, 이듬해 1월1일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천황이 스스로 자신의 '신성(神聖)'을 부정하고 인간임을 선언하였다. 1946년 1월 4일 공직추방령, 1월14일에는 동경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지령에 의하여 전쟁범죄자들이 속속 체포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공산주의자들의 천황제 타도 구호와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이 저널리즘의 동조와 함께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20]

---

17) 전게주 13)의 책 p.39.

18) 히로히토의 국체호지를 위한 첫 번째 적극적인 행동으로 천황측의 주도에 의해 성사된 회담. 여기서 히로히토는 자신이 개전에 반대하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과 패전 후 일본을 자신의 주도 아래, 즉 기존의 천황제 아래에서 끌고 가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전게주7)의 김창록논문 p.192.

19) 큰 키의 맥아더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당당한 모습으로, 그에 반해 작은 키의 히로히토가 부동자세의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선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 것. 일본정부는 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 것을 각 언론사에 명령했으나, 총사령부측이 번복하여 게재하게 됨. 전게주7)의 김창록논문 p.192.

20) 박진우 (1999)「근대천황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일본사상』Vol-No.1 한국일본사상사학회 p.61.

그리고 1946년 2월부터 8년간에 걸쳐 전국을 순행하도록 하여 인간 천황의 실체를 여과없이 국민 대중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그 신격성을 탈색시킨다는 의도가 있었다. 1950년부터 국회개원식의 개회식 칙사를 통해 천황의 말을 칙어라 하지 않고 말씀으로 바꿔 쓰고 있다.[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에서 나타난 천황관은 종국적으로 천황제의 이용과 신권적 천황제의 해체로 표현된다. 천황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천황에 대한 미국의 다음과 같은 인식 때문이다. ① 1942년 9월 14일의 라이샤워(Reischauer, Edwin Oldfather)[22] 각서에서 일본의 패전 후 천황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이 제공하는 '최량의 괴뢰'는 천황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군부의 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를 천황으로 보고 협력과 호의의 상징으로 천황이 가지는 가치가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② 1944년 8월 전시정보국(OWI)에서는 해외전의 분석과(FMAD)를 설치하고 천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작전에서 천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가능한 회피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천황은 신성한 존재이며 천황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인을 격노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③ 또한 맥아더 사령부의 심리작전부(PWB) 판단은 "천황은 국가원수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급하면 일본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군부가 천황을 속였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군국주의자를 일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였다."[23] ④ 1944년 5월 PWC의 분석에서 "외부로부터 천황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일본인의 현재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략) 또한 법률로 그 존재

---

21) 김장권·하종문 (2006)『근현대일본정치사』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p.148~149.
전게주6) 서현섭의 책 pp.253~259.

22) 일본 도쿄[東京] 출생. 1939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중국사 ·일본사를 전공하였고 1942년까지 하버드대학교 교수, 1961~1966년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하였다. 2차세계대전때는 미군의 정보장교로 국무부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다. 주요 저서에 『일본, 과거와 현재』(1946). 『미국과 일본』(1957). 『동아시아:위대한 전통』(1960) 등이 있다.

23) 박진우 (2004)「패전직후의 천황제 존속과 민중」『대구사학』 Vol.75 대구사학회 pp.228~229.

를 말살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불가능할 것이다.” ⑤ “천황은 여왕벌과 같은 존재로서 일본사회의 안정적 요소이다. 만약 벌떼로부터 여왕벌을 끄집어내 버린다면 그 벌집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라고 12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발언한 국무차관 조셉 그루(Joseph D. Grew)와 ⑥ 45년 12월 천황 히로히토의 전범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맥아더의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하면 일본국민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며 끝내는 공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답변과 ⑦ 46년 1월 25일 아이젠하워 육참총장에 보낸 맥아더 서신의 “천황제를 파괴하면 일본도 붕괴한다. 천황은 1백만 명의 군대에 필적한다. 천황이 과거 10년간 일본정부의 결정에 크게 관여한 증거는 없다.” 등의 생각에서 엿볼 수 있다. ⑧ 또한 천황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음에 불구하고 천황의 위광이 떨어지지 않은 것, 점령군의 일본 무혈입성이 가능했던 것 등도 미국을 놀라게 했다. 즉 신권화 된 천황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자 천황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가지는 그 절대성을 확인한 것으로, 천황을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안정에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점령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천황제의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일본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천황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천황을 폐위시키지 않고 이용하기로 결정 한 이상, 미국(GHQ,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연합국최고사령부)은 점령정책의 목표인 ‘일본국이 다시 미국의 위협이 되거나 세계평화 및 안전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는 일’의 달성을 위해 그 위협의 중심이었던 천황제의 신성성을 해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총체적 기반인 천황제의 정신적·제도적·물질적 토대를 해체해 나간 것이다. 그 결과 천황제를 유지하는 대신 천황을 ‘상징’의 지위로 끌어내리고, 일본은 일체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것이다.[24]

---

24) 김창록 (1996)「일본국헌법의 역사에 대한 법사학적고찰」『법사학연구』Vol.17 No.1 한국법 사회학회 p.125.

전후 미국이 점령정책의 중심에 있는 천황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는 결국 전전 천황에 대한 타자의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일본천황에 의한 종전(終戰)의 조칙이 개전(開戰)의 조칙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그 전쟁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점령군의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국 동경재판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천황이 절대적 전제권(專制權)을 가지고 전쟁을 직접 수행했더라도 그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그러한 결정 이면에는 천황제가 절대적 권력이 보장된 군주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천황이 상징적 존재였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천황 히로히토에 의한 전전·전후 천황으로서의 연속 배경에도 천황의 신권적면과 법적 전제성만 해체하면 그 상징성만으로 천황제와 민주주의는 양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신권적면과 전제적면의 해체로 군국주의화의 우려를 없애고 남은 상징적 권위로 점령국의 안정과 통치를 효율화시켰다. 결국 미점령군도 일본천황의 상징성의 위력적인 면을 인식하고 그것을 효율적 통치에 이용한 정치지배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천황제 존속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대전 종결 후 시작되는 냉전체제의 세계구도였다. 특히 맥아더와 그 주변은 철저한 반소 반공주의로 응집되어 있었다. 지일파의 대부 조셉 그루도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천황제를 폐지하거나 천황을 전범으로 회부할 경우 일본인의 저항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고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루는 천황제를 패전 직후 일본의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공산주의의 침투에 대한 방벽으로 온존시키려 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반공주의는 천황제 존속을 기도하는 일본지배층이 정치공작을 전개할 수 있는 커다란 지반이 되었다.

(2) 전후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본국내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

히로히토의 국체호지의 신념은 8월15일 패전의 사실을 알리는 '終戰의 조서(詔書)'에서 잘 나타난다. 종전의 조서에서는 "(…중략)朕은 이에 국체를 호지하여, (…중략)항상 너희 신민과 함께있다. (…중략)거국일가(擧國一家)를 자손에게 온전히 전하고, 神州(일본)의 불멸을 굳게 믿고, (…중략)국체의 정화(精華)를 발양하여, 세계의 진운에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계속 천황제 즉 국체를 유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 "시운이 기울어서 일시적으로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으나 국체호지 즉 천황제를 유지하는 가족국가를 대대후손까지 전하여 일본이 불멸할 것을 굳게 믿고 총력을 장래에 기울여 일본(천황국가)의 정신을 더 높여 세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여 미래를 도모하자"는 것을 선언 한 것으로 국가와 신민, 식민지와 침략국에 대해 사죄하는 등의 패전에 따른 전쟁책임 의식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국체의 유지와 국체의 발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항복은 바로 이 국체가 핵심인 소위 천황의 聖斷[25]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다. 이 성단의 배후에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일본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일본의 정치형태가 결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체는 호지될 것이라는 확신의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패전 후 전쟁책임자 처벌의 문제에 관해 히로히토는 내 대신 키도 코우이치(木戸幸一)에게 "전쟁책임자를 연합국에 인도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일인데, 자신이 혼자 인수하여 퇴위라도 해서 사태를 진정시킬 수는 없을까"(木戸日記, 1945, 8. 29)라고 한데 대해, 국체호지가 위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키도 코우이치의 답변에, 신하를 구하겠다고 하는 '책임감'에서 한때 퇴위를 생각했으나 '국체호지'라는 보다 큰 가치에 저촉된다는 것을 깨닫고 퇴위를 단념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체호지에 나서게 되고 이와 함께 전쟁책임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게 된다.[26]

---

25) 포츠담 선언 수락의 불가피성을 인식한 화평파가 일억옥쇄의 본토결전파를 제압하는데 천황의 권위를 이용한 것으로, 천황은 승산없는 전쟁은 파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황실과 천황통치 대권의 확인을 조건으로 포츠담 선언의 수락 제안에 찬성하는 결단으로, 일본민중을 파국에서 구해 오늘의 풍요로운 사회를 가져왔다는 성단신화를 낳게 됨.

26) "성단이 종전의 조칙이 가능했다면 개전은 왜 저지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 히로히토는 "일본은 입헌군주국가이며 그 헌법에 따르면 헌법상 명기되어 있는 국무 각 대신의 책임의 범위 내에서는 천황이 그 의사에 따라 맘대로 간섭, 제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치든 외교든 헌법상의

나아가 '입헌군주론'에 의한 소극적인 변명에 머무르지 않고, 9월27일 총사령부 본부로 맥아더를 찾아가, 국체호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전하여 맥아더의 천황제를 폐지할 의사는 없다고 확인한 후 일관되게 '국체호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27]가 개헌작업과 관련하여 천황의 퇴위까지도 예상하여, 개헌과 동시에 퇴위를 인정하지 않는 '황실전범(皇室典範)'까지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히로히토는 헌법개정에 대한 자문만을 인정하고, 황실전범의 개정검토는 인정하지 않았다. 히로히토는 점령이라는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의 천황으로서 생활을 계속했고, 12월 15일 총 사령부에 의해 '신도지령'이 내려지기 직전인 11월 12일에도 종전어봉고(終戰御奉告)를 위해 신궁, 산릉에 어친배(御親拜)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1946년 1월1일의 신년조서 소위 '인간선언'에서, 후일 이 조서의 핵심이라고 한 '5개조의 어서문'[28]을 첫머리에 덧붙여, 패전전의 천황제는 민주주의와 합치하는 것으로, 이는 명치유신 당시 이미 오개조의 어서문에서 주장되었던 점임을 밝히려 한 의도다. 요컨대 천황 히로히토(裕仁)는 패전 후에도 전쟁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세일계의 천황을 통치권의 총람자로 하는 '국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이다.[29]

책임자가 신중하게 심의를 하여 어떤 방책을 정해 그것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재가를 청한 경우에는 나는 그것을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재가하는 외에는 취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며 "자신은 시종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하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보았다"라고 한다.

27) 1937년 귀족원 의장에서 제2차세계대전 전쟁기까지 세차례의 수상을 지낸 황실과 가까운 명문가 출신의 인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화제의 지지가 많아질 것"이란 위기의식을 갖고 천황제 유지를 위해 전쟁책임이 있는 히로히토(裕仁)의 퇴위와 조기개선을 통해 천황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28) 1868년 3월 14일 16세의 메이지 천황이 공가·다이묘·백관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서약하는 형태로 발표한 유신의 기본방침으로 신국일본(神國日本)을 표방한 것이며, 천황의 친정을 강조하고 있다.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공론으로 결정할 것' 등 1~3조는 공론(公論)의 존중과 4~5조는 개국화친(開國和親)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대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국화친 역시 형식적 원칙에 불과한 것을 3월15일 그리스도를 배척한 ' 5방의 게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홍윤기 (2003)『메이지유신의 대해부』 인북스 pp.96~99, p.263.

29) 전게주 9)의 책 p.31~32.
첫 각의 후 담화에서 "5개조 어서문의 정신에 따라 (…중략)민주주의 정치의 확립을 기하고자 한다." 라고 하여 5개조의 복귀를 장래의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맥아더의 헌법개정에 대한 시사를 여성

미국으로서는 천황과 군국주의자를 구별하여 일본의 패전을 앞당기고 일본 점령에서 천황을 이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천황 = 평화주의자라는 신화를 계속해서 재생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지배층은 말할 나위도 없이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회피하고 군국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인 민심조작의 이데올로기 선전이 필요했다. 천황과 국민은 모두 군국주의자에게 속은 희생자라는 공감대는 이와 같이 되풀이되는 선전에 의해 침투되어 갔으며 민중의 '속았다'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천황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민중에게서 자신들의 전쟁책임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야스마루 야스오(安丸良夫)는 이와 같이 속았다고 하는 민중의식에는 전쟁책임을 스스로의 것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결여 되어 있으며 낡은 가치와의 내면적인 대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재빨리 새로운 가치를 수용해 가는 자세가 표현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30] 패전 직후 패전공포담(敗戰恐佈譚)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에 대하여 발빠른 친근감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점령군에 의한 대규모의 식량원조와 방출물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를 재빨리 수용하는 심리구조가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어제까지 '귀축영미(鬼畜米英)' 타도와 '국체호지'를 부르짖던 우익은 대규모의 점령군 위안 시설을 운영하는 등 가장 빠르게 친미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전시 중 일본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을 감시하고 본토결전시에는 모두 사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던 경찰은 태도를 돌변하여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다. 경계와 경멸의 눈총을 보내던 이웃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본토결전에 대비하여 죽음을 각오하던 병사들은 마치 휴가를 떠나는 병사와 같은 표정으로 활발한 태도를 보였다. 가미가제 특공대로 출격을 대기하던 병사들조차도 자신의 전투기에 군량물자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심지어는 원폭투하의 피해를 입은 나가사키에서는

에 선거권 부여 등 5개항목의 실현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2의 적인 것으로 받아들임. 오히려 近衛의 개헌작업에 대한 경쟁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함. 전게주7) 김창록의 논문 pp.198~200.

30) 安丸良夫 (2005)「肥大化するナショナリズム史觀」,『世界』6 p.46.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열었으며 미군과 함께 마스 원폭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군국주의를 고취하는데 앞장섰던 보도기관도 불과 일주도 지나지 않아서 민주주의, 의회주의, 국민의 자유의 대변자로 변모했다.

이와 같이 일본 민중의 재빠른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특유의 전통적인 민속관행도 작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가 맥아더에 대한 숭배로 전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 '生き神信仰'이라는 전통적인 민속관행을 무시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천황에게 품고 있던 절대적인 숭배성은 맥아더에게도 같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군부지도자에 대한 경외와 복종은 GHQ로 이동해 갔다. 맥아더의 전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맥아더를 제1대 신무천황(神武天皇)의 재림이라고 칭송하거나 맥아더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맥아더 숭배와 GHQ에 대한 추종이 곧 민중의 천황에 대한 숭배심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맥아더의 권위에 의지하여 천황을 전쟁책임의 처벌로부터 구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민중의 천황에 대한 끊임없는 존중심의 발로였다. 점령기간을 통해서 맥아더에게 보낸 50만 통의 투서 가운데 GHQ의 IPS문서 <히로히토 파일>에는 164통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천황제 폐지를 호소한 것은 9통이며 나머지는 모두 천황의 면책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여론 조사에서는 천황제 지지와 폐지의 비율과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48년 천황 퇴위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때 천황의 퇴위를 부정하는 '유위청원서운동(留位請願書運動)'이 전국에서 수십만의 모임을 가지고 지방교원,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1945년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미쿠니 봉사단'의 황거근로봉사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변함없는 천황숭배의 발로였다. 이와 같이 천황에 대한 '종순' 민중의식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여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천황제 지지가 94.8%이며 천

황제 부정은 4.9%였다. 그리고 천황이 '인간선언'을 한 이후 천황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전의 천황상과는 달리 천황을 정치권 밖에 두고 인간화·민주화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46년 2월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천황제 지지가 91.3%, 반대가 8.7%이며 그 가운데 지지 내용에 있어서는 "정치권 밖에서 민족의 총가장(總家長)으로서 도의의 중심이 된다"에 45%가 기대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위 가족국가[31]의 가치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시행 1년 후에 오사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천황제 존치가 83%, 폐지 10%이며, 그 가운데 새로운 상징 천황제에 대한 지지가 55%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민중이 신성한 천황을 절대시하는 것도 공화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닌 이른바 천황제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천황제와 민주주의의 양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천황의 '인간화'·'민주화'의 모색과 이를 받아들이는 대다수 민중의 수용적인 반응은 GHQ의 비호 아래서 장기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천황의 전국순행에서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946년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천황의 전국순행을 맞이하는 각 지역에서의 대대적인 환영체제에는 지역 지도자층이 자신의 인기를 만회하고 세력을 온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천황순행이 맥아더의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서 '평화천황'·'민주천황'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황 순행은 크게 대외적인 대응과 대내적인 대응이라는 두 가지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대외적인 대응에서는 다분히 동경재판에 대한 국제여론을 의식한 것이었으며 순행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천황의 인기를 증명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내적인 대응에서는 천황이 진심으로 국민과 고난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재현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민주적인 '인간천황'의 이미지를 창

31) 국가가 하나의 큰 가족과 같다는 사상을 지배의 원리로 하는 국가 유형. 제2차세계대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이용하였다.

출해 나가는 것이었다. 한편 패전 전의 대원수복(大元帥服)에 대신해서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흔들며 미소지우는 '인간천황'을 맞이하는 민중의 열광적인 환영체계는 비록 그것이 행정적인 작위에 의해 연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수용하는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대부분의 민중은 천황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만세삼창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천황과의 일체감을 확인했다. 히노마루의 파도와 기미가요의 제창은 일체감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민속관행에 의거한 민속적인 천황상도 되살아나고 있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 조차도 천황을 외면하지 못했다. 미쓰비시(三陵)중공업의 좌익 노동자들의 경우, 천황의 전쟁책임 추궁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천황의 공장 방문을 맞이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막상 천황의 행렬이 도착하자 압도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연도에 정렬하고 300명을 넘는 세포원까지 '히노마루'를 흔들면서 열광했다. 대다수의 민중은 천황과 자신의 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민족적인 귀속감과 일상에서의 안태를 희구하고 있었다. 천황의 전국순행은 그런 의미에서 천황의 '인간화'·'민주화'라는 말 그 자체를 민중이 천황의 행동을 통해서 납득해 가는 장치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적 기준으로 천황의 존재와 행동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존재와 행동에 의해 민주주의의 내용을 수용하고 납득하는 것이었다. 천황순행에서의 방문지역은 주로 산업, 노동현장의 시찰이 많았으며 그 밖에도 전쟁재해자와 전몰자 유족에 대한 방문도 있었다. 천황을 수행하는 측근들은 특히 좌익노동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했으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큐슈방문에서는 간혹 불순한 분위기가 측근들을 긴장시켰으나 그들이 우려한 천황암살의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1946년 10월 천황이 나고야를 방문했을 때 스스로 남조 적통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熊澤天皇'이 차량 행렬의 후미에 지프를 타고 등장한 것은 이미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가 제거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1951년 11월 12일 천황의 쿄토대학 방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면서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항의한 것은 천황순행에서 드물게 보이는 '저항'이었다. 이상과 같이 대다수 민중의 천황에 대한 '종순'은 전후 상징 천황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천황제를 비판하거나 존재를 부정하고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소수의 일탈자에 지나지 않았다. 민중의 천황에 대한 '종순'은 공산혁명의 가능성은 커녕 일본사회의 민주화에도 커다란 장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의 민중의 천황에 대한 '종순'을 패전 전의 그것과 전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전의 신성한 천황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벗어던지고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에 부합하는 '인간천황'의 새로운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궁핍, 그리고 패전 후의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심리구조의 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황은 비할 데 없이 순수하고 무구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었으며 천황에 대한 민중의 '종순'과 '경애'는 패전 전과 같은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헤쳐 왔으며 앞으로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에 의한 것으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내고 있었다. 패전 후 민중이 천황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60, 70년대 상징천황제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는 60~70년대 권위적 개혁파의 천황제 강화론이 실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천황제의 '지반침하'로 설명하였다.[32] 즉 60년대에는 '안보번영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내셔널리즘의 부재속에서 천황제이데올로기는 번영과 성장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천황제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야스니쿠스 신사 참배를 비롯하여 히노마루·기미

32) 渡辺治 (1989)『現代政治構造の中の天皇制』『歴史學硏究』592 p.23.

가요 등을 둘러싼 제문제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야마다 타카오(山田敬男)는 와타나베의 '지반침하'설을 비판하면서 60년대 이후에는 천황제이데올로기가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기업사회의 논리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천황제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표면화되었다고 하였다. 즉 국가의 지배체제 속에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자체가 상징천황제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와 기능이라는 것이다.[33] 따라서 60년대 이후의 천황제는 '지반침하'가 아니라 보수정당과 재계의 정치·사회적인 이용이 증대됨으로써 상징천황제의 부차적인 역할과 기능이 보다 명확해진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4]

특히 60년대 이래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와 이기주의적인 대중사회의 형성은 천황제의 국민통합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경연(日經連)의 전무이사 마에다 하지메(前田一)가 일본에서 예부터 '희생정신과 순충(殉忠)정신'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배양되어 왔으며, "일본민족이 국민의 상징으로서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정신적 지주를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다른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볼 수 없다"[35]고 한 것은 기업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노동자의 '희생정신과 순충정신'을 환기하는 데 있어서 천황의 전통적인 권위를 이용하고자 한 것 이었다.[36]

이와 같이 기업사회에 있어서 천황제가 국민통합에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역할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전통적인 권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정치적인 권력을 상실한 상징천황제를 권위적으로 보강하는 공식의례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

33) 山田敬男 (1997)『現代天皇制研究の今日的時點』『歷史評論』564.

34) 中村政則 (1992)『戰後史と象徵天皇』岩波書店. 安田濟雄 (1995)『象級天皇制の50年』『戰後50年どう見るか』青木書店 에서도 상징천황제의 정착을 1959년 이후부터로 보고 있으며 패전에서 그 동안의 15년을 상징천황제가 정착되는 과도기로 평가하고 있다.

35) 横田耕一 (1990)『憲法と天皇制』岩波書店 p.70.

36) 고도경제성장에 의하여 형성되는 기업사회는 천황제 존속에서도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고 있었다. 齋藤哲雄는 1970년대 천황제 지지는 모든 기업 경영자에서 사무직, 숙련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기업사회에 있어서 천황제 비판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齋藤哲雄 (1983)『天皇の社會心理』彩流社.

1964년에는 생존자서훈과 제2차세계대전 전몰자에 대한 서훈이 부활함으로써 천황제를 명예의 원천으로 인식케 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천황에 대한 외경심을 부양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96년에는 '祝日法改定'에 의하여 종래의 '기원절'이 '건국기념일'로 지정되고 정부주최의 전몰자추도식이 정기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운동, 연호법제화운동, 신사본청을 중심으로 한 불경죄부활운동과 교육칙어부활운동, 교과서재판사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비롯한 천황제교육의 부활[37]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의 내셔널리즘을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침략전쟁이 서구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주장이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부터였다. 또한 1968년에는 '明治百年祭' 캠페인을 통하여 만족의 문화, 경제성장을 예찬하고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메이지 이래의 일본근대화를 '성공담'으로 미화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화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침략과 억압의 역사를 영광과 번영의 역사로 날조함으로써 역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집단적인 망각을 촉진하고 심지어는 미화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기억의 선별에 의한 '기억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천황제를 금기시하는 풍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1960년의 '風流夢譚事件'[38], 1961년의 '『思想の科學』폐기사건' 등과 같은 우익테러나 궁내청의 압력을 계기로 천황·천황제 비판을 회피하는 매스컴의 '천황 터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39]. 이에 따라 사회의 갖가지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질적인 발상과 행동을 극력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

37) 교육칙어적인 발상의 부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66년 10월 31일 답신된 중앙교육심의회의 『期待 される人間像』이었다. 여기서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경애심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齊藤憲司 (1989) [資料集成·象徵天皇制(2)] 『ジュリスト』 pp.240~206.

38) 1960년 사회가 안보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후카자와 시찌로(深澤七郎, 1914~1987)가 「중앙공론」에 <풍류몽담(風流夢譚)>을 발표하였으나, 천황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썼다고 하여 우익 세력의 습격을 받았다.

39) 전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테러와 압력에 관한 내용 齊藤憲司 (1989)『資料集成·象徵天皇制』『ジュリスト』pp.272~273.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른바 '상식의 전횡'이 사회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천황제에 대한 공적인 비판은 더욱 어렵게 되어갔다.

한편 천황제의 권위강화와 거의 동시 진행적으로 공식의례를 통한 상징천황제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었다. 1964년의 도쿄올림픽과 1970년의 오사카만국박람회(大坂萬國博覽會) 개최식전에서 천황은 '신생일본'의 고도성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5년부터는 사회 각계각층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자들이 황실의 초대를 받아 천황을 배알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원유회(園遊會)가 정기적으로 행해지면서 천황을 명예와 문화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공식문화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하면 할수록 천황과 거리가 좁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는 천황제의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60년대 이래 황실 외교가 전에 없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도 역사인식과의 관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안고 있다. 50년대의 황실외교가 전쟁의 상흔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황태자를 이용하여 소극적인 전개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데 비하여, 60년대부터는 근린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천황이 직접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후진성은 일본의 개발원조에 의거하여 지배정권의 존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의 경제적 종속화는 일본에 대한 전쟁책임 추급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억눌러 왔다. 천황은 근린 아시아 제국의 원수들과의 빈번한 '외교'를 통하여 경제선진국 일본의 후진국 아시아에 대한 원조과정에 있어서 식민지지배와 전쟁책임을 비롯한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40]

70년대 황실외교는 천황의 두 차례에 걸친 구미방문으로 대표된다고 할

40) 60년대 황실외교를 보면, 1960년 천황과 서독수상 회견, 황태자부처의 방미(미일수호100주년) 및 이란·에티오피아·인도·네팔 순방, 1962년 황태자부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문, 필리핀 방문, 1966년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견, 1968년 티토 대통령과 회견, 1968년 수하르트와 회견, 1968년 티토 대통령과 회견 등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있다. 천황의 외유를 통하여 상징천황제의 평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본래의 의도[41]와는 달리, 천황의 전면적인 등장은 '기억의 공동체'가 잊어가던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 유럽방문에서 천황은 전범추급에 대한 민중들의 데모에 직면하였다.[42] 국내에서는 상징천황제가 전쟁과는 무관한 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제2차세계대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유럽인들에게 천황은 히틀러와 같은 침략전쟁의 원흉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1975년 천황의 미국방문은 미일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추진 된 것이지만 상징천황제의 성격과 전쟁책임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귀국 후 일본인 기자대표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전쟁책임에 대한 천황의 발언은 실로 무책임한 역사인식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당시 천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지만, 예정되지 않았던 관련 질문은 전쟁책임과 원폭투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었다. 천황은 전쟁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런 표현에 관해서는 나는 그러한 문학 방면은 그다지 연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시민에 대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실로 군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정도로 무책임한 답변이라 해야 할 것이다.[43]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천황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아무도 문

41) 당시의 신문을 보면 "풍부한 국제감각과 친근감이 넘치는 인간성을 가지신 양 폐하가 유럽 각 국민에게 주는 인상은 전전 이래의 일본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을 일소할 것 이다." (『日本經濟新聞』 1971년 9월27일자 사설)이라는 등 천황의 외유를 계기로 천황제에 대한 전전의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42) 유럽에서의 천황방문 반대데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朝日新聞』 1971년 10일 7일자(석간);『每日新聞』 1971년 10일 8일자(석간) 및 10월10일자 『讀賣新聞』 1971년 10월9일·19일자

43) 宇佐美宮內廳長官은 이에 대하여 "천황은 스스로 질문하는 일은 있어도 질문을 받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하였다. 『朝日新聞』 1975년 11월 1일자

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황의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였다.[44] 천황은 1971년 히로시마 원폭위령비에 처음으로 참배하였으나 타 지역 방문시와 다름없이 히로시마 민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결국 히로시마 민중들의 천황에 대한 열렬한 환영은 기자회견에서 '원폭은 부득이 하였다'는 천황의 무책임한 발언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라는 피해자 의식이 강하며 이는 결국 전쟁책임의식을 상쇄하는 것이다. 천황의 지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민중, 천황의 무책임한 전쟁발언을 수용하는 민중, 그리고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매스컴의 자세에서 '기억의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어두운 역사를 기억 속에서 지워 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

3) 80년대 이후의 상징천황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의 변화는 상징천황제의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일본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자본진출의 증대와 국제적인 무역마찰의 심화,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지탱하여 왔던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외국에 대한 일본인의 정체성 강화가 불가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70년대 말까지 국가에 대하여 주로 경제적인 역할을 요구하던 기업이 국제공헌과 해외로 진출한 자국의 자본을 보호하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군사적인 역할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불가결한 문제로 대두하였으며, 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천황의 존재가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

44) 共同通信社가 천황의 발언 직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천황의 전쟁책임은 없다"와 "무어라 말할 수 없다"가 합계 56.6%에 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이 "천황의 전쟁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납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시다유타카(吉田裕)(2005)『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pp.162~163.

이러한 국제적 조건과 더불어 히로히토 천황의 고령화는 차기 천황이 과연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구심점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말년에 "요즈음 청년들은 황실에 관심이 거의 없다. 아키히토 시대가 되어도 황실이 안태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45]고 우려한 것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차기 천황에게 결여된 카리스마를 보강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구체적인 군주의 인격이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천황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물론 천황제의 권위강화는 복고적인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80년대 이래 천황제이데올로기의 특징은 '국제화'의 표어에 맞추어 천황의 '평화주의'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문화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전통의 이름으로 천황의 권위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전통문화의 우수성·특수성을 강조하는 '일본문화론'의 유행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때마침 일본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국민적 자부심의 증대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46] 여기서는 '일본문화론'이 대두하는 과정을 통하여 천황제와 역사인식과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80년대에 들어와 국제화의 슬로건을 내세우는 가운데서도 기미가요·히노마루의 철저화와 교과서 기술의 언론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1985년 신사본청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소책자에서는 천황을 天照大神의 자손이라고 하는 낡은 신화가 부활하였으며, 역사교과서에는 '大和魂'의 신봉자 도고헤이하찌로(東郷平八郎)가 근대일본의 영웅으로 재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천황제와 관련된 대대적인 공식의례도 창출되고 있었다. 1982년 건국기념일 행사에서는 기원절 노래를 작사한 마유즈미 토

45) 加瀬俊一 (1989)「いま改めて天皇制を問う」『昭和天皇の時代』 文藝春秋社 p.101.
46) 매코맥은 일본의 경제대국화는 과거의 극복과 이웃 국가들과의 이해조정에 중대한 장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G. 매코맥 (1994)「일본사회의 심층구조와 '국제화'」『창작과 비평』. 青木保 (1990)『日本文化論の変容』 中央公論社 p.114.

시로(黛敏郎)가 기념식사에서 “神武天皇의 건국이념은 八紘一宇이며, 八紘一宇야 말로 참된 민주주의”라고 하여 노골적인 ‘皇國史觀’ 부활을 꾀하였다.[47]

특히 1986년 천황재위 60주년 기념식전은 ‘평화주의자’ 천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대규모 캠페인으로 전개되었다. 기념행사 당일의 식시사서는 ‘평화’·‘자유’·‘번영’ 등의 언설을 남발함으로써 천황재위 60년에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전쟁·침략과 같은 비참하고 어두운 기억의 망각을 촉진하였다.[48] 뿐만 아니라 신사본청을 비롯한 각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축행사에 민속예능을 대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행사에 참가한 지역 민중들의 소박한 애향심을 충군애국·멸사봉공의 국가주의적인 애국심으로 이어가려고 하였다.[49]

그러나 80년대 천황제이데올로기의 강화와 내셔널리즘[50]의 재구축은 국제적인 조건과 얽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자위대 파병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을 군국주의의 부활로 보는 아시아 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성이 크게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80년대 후반 이래 일본의 수상들이 빈번하게 사죄발언을 거듭하였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인 정치목적을 앞세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천황의 ‘사죄’발언 문제도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

47) 건국기념일식전은 1985년부터 전 국민적인 공식문화로 확대되었으며, 천황의 장수기원과 만세삼창을 하는 등 천황의 권위강화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전개되었다. 전게주35)의 책 p.106.

48) 1986년 천황재위 60년 기념식전에서 히로히토는 “국민 제군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기원하고 새로운 희망찬 국가건설을 희망하고자 한다.”고 하는 원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文化評論編輯部 編(1986)『天皇制を問う』,新日本出版社 p.425.

49) 歷史教育者協議會 編 김현숙 역 (2008)『日本歷史と天皇』혜인 p.383.

50) 내셔널리즘은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된 이후의 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그것은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게 보통이고, 한국과 같은 구 식민지의 반항적 민족주의는 독립과정 또는 독립 이후 국민의 결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족주의적 가치가 숭상되어 온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명치유신이후 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 천황을 중핵으로 하는 네셔널리즘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고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새로운 민족주의의 대두를 네오네셔널리즘이라 할 수 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사료됨.

천황의 사죄발언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제적인 인정과 함께 천황의 전쟁책임을 비롯한 한일 양간의 전후처리 문제를 청산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식민지지배와 전쟁책임 문제를 더욱 애매하게 희석화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천황의 '사죄' 발언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혐한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기억의 공동체'의 심층구조에 자리하고 있는 천황제의 문제가 은폐되어 있는 한 일본의 반복된 '사죄' 외교도 역사인식의 기만성을 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이래 국제적인 '사죄' 외교와 국내적인 국수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이용한 전형적인 인물은 '국제국가일본' 과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실현하려 한 나카소네였다.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부르짖으면서 '국제화'의 표어를 내걸고 국제평화에 공헌하는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나카소네는 대외적으로는 교과서 왜곡사건을 해결하고 천황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 발언을 유도하는 등 '국제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참배하고 건국기념일 봉축집회와 '천황재위 60년 기념식전'을 강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의무화를 강화하는 등 국수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카소네의 이러한 사상은 1985년 자민당 세미나 강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나카소네는 "일본의 나쁜 점을, 전전의 나쁜 점을 적으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다. 나는 반대다. 이겨도 져도 국가는 국가다. 영광과 오욕을 함께하는 것이 국민이다. 오욕을 버리고 영광을 희구하여 나아가는 것이 국가이며 국민의 모습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일본의 과거의 업적을 비판하고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망각을 정당화하고 영광스런 역사만을 기억하려는 기억의 선별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카소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적 아이덴티티의 구

심점은 천황의 존재에 있었다.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재확립하는데 있어서 천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일본문화의 전통적 권위로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나카소네의 의도를 학리적으로 이론화한 것은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新京都學派'를 비롯한 일본 최고의 지식인들에 의한 '일본문화론'이었다.[51] 이들의 주된 관심은 일본의 우월성·특수성을 일본문화의 심층구조 속에서 파헤치는 것으로 얼핏 보기에는 전쟁이나 침략, 또는 내셔널리즘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일본의 우월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일본문화론'도 실은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표출된 내셔널리즘의 한 형태[52]에 틀림없다. 다만 그것이 전전의 『國體の本義』등과 같이 노골적인 내셔널리즘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와 문명으로 분식하고 천황을 핵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이 국익이나 국가에고이즘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문화·문명은 처음부터 국가의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지고의 이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데올로기성을 분간하기 어려울 뿐이다.[53] 이상과 같이 80년대에 등장하는 천황권위의 강화는 국가 내셔널리즘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본문화론'의 심층구조 속에 자리함으로써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에서 동떨어진 위치로 피해 가고 있었다. 그 내실은 천황이 곧 일본의 전통문화의 상징이며, 단일민족 신화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천황제를 천년 이상에 걸쳐 지탱하여 온 일본 문화의 특질로 설명하는 비역사적인 논리는 정치가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전통'으로 정착되어 갔다. 천황을 일본 문화의 중심으로서 일본인의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재구성하는 구심점으로 선전하고, 이를 대부분의 일본인이 무의식중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여

51) 박진우 외 (2009)「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동북아역사재단 p.291.
52) 鯵坂眞 (1986)「'新京都學派'の日本文化論」『文化評論』.
53) 西川長夫 (1992)『地球時代の民族理論』,新曜社 p.28.

갈 때, 전쟁책임론을 비롯한 역사인식의 발전에 커다란 장해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1980년대 말의 '昭和'의 종언과 냉전체제의 붕괴는 일본이 전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과거의 역사에 대한 문제를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패전 후 히로히토의 전쟁책임 면책과 천황제의 존속은 냉전체제의 세계적인 구도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의 동시대적으로 발생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昭和'의 종언은 이제까지 망각하여 왔던 역사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면서 결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공동체'는 뿌리 깊은 역사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해결을 회피하고 이를 또 다시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었다.

히로히토의 중태가 보도된 1988년 9월19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매년 예외 없이 개최되던 운동회와 축제가 중지되고, 황거(皇居)앞을 비롯하여 전국의 신사에서 천황의 쾌유를 기원하여 기장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육백만에 이르렀다. 일본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과잉자숙으로 빠져들었으며, 마치 일본에서 당치도 않는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였다.[54]

천황캠페인을 비롯하여 갖가지 기이한 과잉자숙의 현상들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천황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천황이 사망한 당일 조기 게양에 반대하거나 묵도를 거부하는 것은 일탈된 행동으로 비쳤으며, '일본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이질분자'로 간주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용기를 필요로 하였다. '집단적인 열광'은 폐쇄된 내셔널리즘과 편협한 애국심을 양성함으로써 이질분자의 배제로 이어질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잉자숙과 천황열기의 현상은 민중의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측면보다도, 정부와 매스컴의 이데올로기 조작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54) 천황의 죽음을 전후하여 일본사회를 풍미한 자숙일색 현상의 구체적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栗原彬·杉山光信·吉見俊哉 編 (1992) 『記錄·天皇の死』筑摩書房 p.386.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천황의 와병이 전해지면서 수상을 비롯한 정부고관의 해외출장이 취소되었으며, 각 지방자치제를 비롯한 공권력 조직은 각 소속원의 자유의사를 배제하는 형태로 천황열기에 종속시키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히로히토의 사망에 즈음하여 발표된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입법·사법부의 장과 각 정당의 근화(謹話)는, '격동의 시대', '세계평화', '국민의 행복', '평화와 민주주의', '국제화', '일본의 상징', '국민통합의 상징', '경애와 신뢰', 등의 단어를 남발하였으며,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천편일률적인 논조로 일관하는 놀라움을 보였다. 패전 이후 지속적으로 선전되어 오던 평화주의적인 천황상은 히로히토의 죽음을 계기로 절정에 달한 것이다.

히로히토를 '평화주의자'로 선전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 왜곡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내각총리대신 근화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의 개전은 천황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전제하고 전화(戰禍)에 고통 받는 국민의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일신을 아끼지 않고 전쟁종결의 '영단'을 내리셨다"고 하여 상투적인 '신화'를 되풀이 하였다. 1945년 9월 27일 맥아더 원수와의 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였다는 천황의 '용기'도 빈번하게 재생산되었다.

정부의 평화주의적인 천황상의 선전 이상으로 천황찬미를 구가한 것은 매스컴이었다. 신문·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컴은 비판정신을 상실하였으며, 역사에 대한 무책임과 획일적인 보도자세로 일관하였다. 히로히토는 '성단'에 의하여 전쟁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전후번영을 구축한 천황으로, 과학자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천황으로,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인자한 천황으로 선전되고 있었다. '기억의 공동체'는 '昭和'의 종언을 계기로 전쟁을 평화로, 비참을 영광으로 바꾸는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재일 프랑스신부가 "전후 일본의 힘을 낳은 것은 망각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집중"이라고 말하였듯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하고, 전전의 역사를 망각하며,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을 긍정하는 '기억의 공동체'는 실로 역사인식의 황폐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천황

의 평화주의적 인격을 되풀이해서 부각시키는 정부와 매스컴의 공세에 접하는 일반 민중은 어느새 개인적인 견해와 독창성을 상실하고 이러한 지배적인 정신과 사상 속에 매몰되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매스컴의 대대적인 천황캠페인이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다. 1989년 3월에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에 의하면 히로히토에 대한 친근감이 1988년 10월 조사에서 26.7%였던 것이 36.1%로 증가하고 있으며, 천황사망에 관한 특별방송 시청시간과의 관계에서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답한 자를 보면 4시간 미만이 50.8%, 4~7시간이 48.1%, 7시간 이상이 40.4%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 밖에도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한『朝日新聞』의 조사에서는 '있다' 25%, '없다' 31%, '잘 모르겠다'가 38%이며,『毎日新聞』의 조사에서는 '있다' 31%, '없다' 35%, '모른다' 29%였다. 여기서 '없다'와 '잘 모른다'를 합하면 대체로 과반수 이상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억의 공동체'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집단적으로 망각해 가는 과정은 '代替り(황위계승)'의 국가적인 의례과정을 통하여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위식과 장례식에서는 황실의례의 역사와 전통을 심미화하여 군주의 신성한 권위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大嘗祭는 천황이라는 지위에 신비감과 권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행해짐으로써 상징천황상의 신비화가 극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신천황 아키히토의 즉위와 히로히토의 장례식, 그리고 大嘗祭로 이어지는 '代替り(황위계승)'의 의례과정은 후지타니가 '전자 미디어의 페이전트'라고 부르듯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한 '국가적인 식전'으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방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한 텔레비전의 국가적인 이벤트로부터 벗어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代替り'의 황위계승 과정에 대한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는 것은 천황제의 실체가 아니라 선별된 정보뿐이었다. 텔레비전은 장례식

행사를 중계할 때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춤으로써 히로히토와 평화의 이미지를 일체화시키는 화상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텔레비전에서는 히로히토의 64년간에 이르는 재위기간을 통하여 결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가부장제의 상징,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오키나와전에서 '황군'에 의한 주민학살과 집단자결, 원폭투하, 731군부대 등과 같은 고통과 비극의 역사에 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황위계승 과정을 통하여 재일조선인 오키나와인 등과 같은 소수자의 천황제에 대한 갖가지 반대행동이나 반대의견의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한 구경물로서 취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차별과 식민지지배, 그리고 침략전쟁으로 상징되는 전전의 어두웠던 역사를 기억 속에서 적극적으로 망각함과 동시에 식민지지배나 침략전쟁과는 거리를 가지는 신 천황을 '평화'와 동일화시키려는 경향은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제까지 히로히토가 평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전쟁과 관련되는 어두운 역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던 데 비하여, 신 천황을 전쟁이라는 이미지와의 단절 속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정착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신천황의 즉위가 곧 '昭和'의 어두운 역사와의 단절을 완결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천황은 1989년 1월 9일 궁중에서의 '朝見의 儀'에서 "되돌아 보건대 大行天皇(히로히토)께서는 재위 60여 년에 걸쳐 오로지 세계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祈念하시고, 격동의 시대에도 항상 국민과 함께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시어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고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여 히로히토를 '평화주의자'로 공헌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황의 즉위를 계기로 '평화주의자' 히로히토의 '신화'를 재확인하고 어두운 역사의 중하(重荷)로부터 해방되고자 할 때 상징천황제가 안고 있는 역사왜곡의 속성은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천황이 같은 해 8월 4일의 기자회견에서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매우 소중한 일이며,(…중략)현재 세계는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인류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고 답한 것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답변이며, 그릇된 역사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침략과 가해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는 ‘昭和’의 어두운 역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 신천황의 유럽방문에서 유럽의 민중들이 보여준 비판적인 반응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전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천황제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역사인신의 극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국제정세의 변화와 천황제

최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의 대두와 일본의 상대적인 위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은 경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나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한국 등의 추격, 일본기업의 위기, 동일본대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상당한 범위에서 국가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위협론의 부상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인식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경쟁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이상의 군사 안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고도성장의 경제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군비 확충과 군현대화를 추진하여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하려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의구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중국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21세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다. 시대착오적인 중화사상은 아시아의 패권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고자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예측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일본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있으

며, 만약 미국이 없다면 일본의 선택은 핵무장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중국의 일본영해에 대한 잠수함 도발행위와 남사군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면 보통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헌법개정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와 200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사회 전체에 커다란 안보불안을 안겨주었다. 특히 대포동 미사일은 2000Km나 되는 사정거리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이 일본 혼슈의 북부 아오모리부근을 통과하여 북태평양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일본국민들에게 엄청난 쇼크였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행위는 일본 우파의 염원인 군사대국화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지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일본 불바다론'은 일본으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개정론에 더욱 힘을 실어 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헌법개정론이 표면에 나온 배경에는 일본에 위협이 되는 중국과 북한 요인들을 견제하려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 정책결정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2011년 11월1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노다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지역경제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안전보장도 함께 실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어 든든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견제[55]하고 나아가 한미 FTA체결로 초조해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돌파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노다의 제의는 일본 국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그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다의 이야기를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것은 보수적 성향의 마쓰시타 정경숙출신이고 "야스쿠니에 전범은 없다."고 했던 그가 총리 취임 후에는 "야스쿠니에 가지 않겠

55) 실제 중국은 노다 총리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거꾸로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협정을 제안한바 있다.

다.”고 하고 있으며 당내 입지도 약한 그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결단한 것은 하토야마총리나 간 총리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발톱을 감춘 듯한 그의 언행으로 미루어 위기에 편승하려는 보수우익세력의 득세[56]와 함께 천황이 헌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셔널리즘의 중심핵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2. 상징천황제에서의 천황의 지위와 정치성

1) 상징천황제에서의 천황의 법적지위

기술한 바와 같이 상징천황제는 전전의 명치헌법의 천황제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명치헌법하의 천황제는 무제한의 정치권력을 소유한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천황제의 절대주의적 성격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전전의 절대천황제는 통치원리 그 자체가 국민의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천황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과 일체감을 요청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전전의 천황제 내에 입헌적 기구에 의한 민주정치가 원래부터 담보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개항 이래 선진국의 뒤를 숨 가쁘게 쫓아간 전전의 천황제국가는 국

---

56) 2011.11.27일 치러진 일본 오사카(府)지사와 오사카(市)시장 동시 선거에서 지역 정당인 ‘오사카(大阪) 유신(維新)의 모임’ 소속 후보가 중앙 정당 지원 후보를 누르고 모두 승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사카 시장 선거에선 ‘오사카 유신의 모임’ 대표로 전 오사카부 지사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후보가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제1야당 자민당이 연합해 밀었던 현 시장에게 승리했다. ‘오사카 유신의 모임’ 간사장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47) 후보도 오사카부 지사로 새로 선출됐다. 2008년 오사카 지사로 등장한 그는 ‘젊은 고이즈미’ ‘제2의 오자와’로 불리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민주당 대표처럼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더쉽 부재’라는 일본 정계의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일본 총리 선출 방식은 (국민이 직접 뽑는) 공선(公選)제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독재다.”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한다,”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기존 정치권이 견제할수록 그는 시민,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며 대중정치를 구사했다. 사상적으로는 극우에 가깝다.
선거전(前)인 요미우리신문 25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0%는“일본 정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7%,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83%가 이렇게 답했다.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는 ‘늙은 야당’ 자민당, 5년 만에 총리가 6명이 등장하는 허약한 일본 정치풍토 모두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할 수 있다.

내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민주세력들은 언제나 억압되어 천황제의 전제화(專制化)를 방지할 수 없었다. 쇼와초기의 비상시에는 신본주의(神本主義)에 편승한 천황의 절대주의적 권위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57] 정부는 어디까지나 천황의 정부이고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다. 국가의 모든 관리들은 상급관료에서 말단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황의 정부와 천황에게 충의(忠義)로서 멸사봉공하면 그만이었다. 그들은 결코 의회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 천황은 헌법에 따라 무제한의 정치권력을 갖게 되었고, 중의원의 결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이나 해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천황은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전의 천황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통치권의 총수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전제적 국가기구 그 자체였다. 바꾸어 말하면 천황제가 정치시스템의 일부로서 존재했다기보다 천황제가 국가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전의 천황제는 그 정점에 위치하는 '통치주체(=주권자)'인 만세일계의 천황이 단지 정치적 권위와 권력의 원천에만 머무르지 않는 국가체제로, 이 체제는 천황제가 도덕적·종교적 가치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정치와 도덕, 聖과 俗이 일체화한 도덕국가, 종교국가이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의 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들의 사회적 위신이나 도덕적 우열 등도 만세일계의 천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족을 포함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도 천황에 대한 감정(충성심)정도에 따라 재단되었다. 따라서 천황제는 전전의 일본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국가 기구인 동시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질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지배체계인 동시에 가치체계이기도 하였다.

반면 전후의 상징천황은 국민주권주의에 바탕을 둔 상징적인 지위에 있다. 전전 천황제 아래에서 국민은 천황제에 봉사하기 위한 존재였으며, 자신들의 기본적 인권도 누릴 수 없었다. 일본국민들도 그와 같은

57) 小林直樹 (1976) 「現代天皇制論序說」 『法律時報』第48卷4号 p.16.

선천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세기 동안 기본적 인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냈다. 따라서 신본주의에 바탕을 둔 천황주권주의를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될 수 없으며, 언젠가 다시 국군주의자들의 손에 의하여 침략적 천황제로 탈바꿈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58]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상징천황제는 전전천황제가 갖고 있던 정치적 권력의 존재근거 자체를 철저히 배제했다.

천황의 정치권력은 대권에 관한 규정의 차이이다. 명치헌법 제 4조에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9] 따라서 명치헌법 체제하에 제도적으로 규정된 천황의 정치권력, 즉 대권은 실로 광범위한 것이었다. 천황제 정치권력구조는 형식적으로 권력분립제를 채택하여 천황은 통치권 총수로서, 행정권은 천황의 친재(親裁), 입법권은 제국의회, 사법권은 재판소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삼권 상호간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는 분립제가 아니라 천황이 강력한 대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대권이라 천황의 헌법상 권능으로서 이것을 구별하면 통치대권, 군통수대권, 영전대권, 제사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통치대권을 광의로 해석하면 행정권은 국무대신의 보필에 의하여 천황이 전재하며, 입법권은 의회의 협조에 의하여 천황이 행사하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 요컨대 삼권은 모두 천황대권에 포함되어 천황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재의 헌법은 위에서 열거한 천황의 모든 대권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함으로써 상징천황제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또한 그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정치체제의 안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천황은 재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다만 이것을 공표하는

58) 藤原政治 (1974)「象徵天皇制について」『國際商科大學叢』第9号 p.45.
59) 作品社編輯部 (1989)『讀本 憲法の100年1: 憲法の誕生』作品社 p.367.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긴급칙령이나 독립명령은 전면 폐지되고, 관리의 임명이나 사면은 내각의 권한에 속하며, 천황은 다만 인정의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영전대권은 영전을 수여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바뀌고 조약의 체결은 내각이 국회의 승인을 거쳐 행사하게 하고, 천황은 비준서를 인정하는 권한만을 가지게 되었다. 관제(官制)는 법률로 정하게 되었고, 군의 통수나 계엄대권, 비상대권 등도 소멸해 버렸다. 또한 제사대권도 박탈함으로써 政教分離主義원칙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신사신도(神社神道)를 국교로 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교분리주의 원칙의 확립과 종교와 교육으로부터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를 제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60] 따라서 신사신도는 국가적 종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고 제주로서의 천황의 지위도 상실되었다. 황실에서 거행하는 제사는 황실일가의 제사로 국한하고 국가와는 관계가 없게 되었다. 또한 제사 때 문무관료를 참석시키는 것도 금지되었다.[61]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전후의 상징천황제는 전전의 절대천황제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상징천황의 지위도 정치적 권능이 없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천황상징설은 천황이 상징적 지위에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 1조를 근거로 전개되는 논의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설은 상징의 일반적 개념에 기초하여 “천황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상징’ 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상징이란 주로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형상 혹은 心象이거나, 그 집단의 약속으로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 등을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거나 대표시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62] 이러한 상징의 일반적 관념과 관련하여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것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미노베(美農部達吉)는 “국민통합의 상

60) 村上重良 (1979)『現代日本宗教問題』朝日新聞社 pp.78~79.
61) 浦田賢治 (1989)『象徴天皇制原義-憲法的考察』『日本の科學者』第24卷2号 P.30.
62) 青山武憲 (1986)『所爲象徴小考』『亞細亞法學』第20卷1-2合併号 p.21.

징은 곧 국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천황은 일본국가의 상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63] 하였다. 그러나 사사키는(左左木笏一) 미노베가 주장하는 상징의 의미가 '국가는 곧 국민통합'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상징의 일반적 관념에서 볼 때 상징의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국 사사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천황의 상징성을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천황이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것은 천황이 일본국의 어떤 성질, 즉 일본인이 독자적인 생활체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단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천황이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것은 일본국이 그 자신 하나의 생활체이면서 그곳에 다수의 일본인이 통합되어 일체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학설은 천황기관설로서 상징천황이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천황의 공적행위인 국사행위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상징천황제 지지자들은 특히 이와 같은 천황기관설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황의 상징적 지위에 합당한 상징기능의 장에서 행하여지는 국사행위가 국가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란 국가의 의사구성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며, 또한 그것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며,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을 국가와 관련해서 혹은 그 지위를 일컫는 명칭이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효과는 직접 국가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오미야(大宮荘策)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의미에 근거하여, 일본국 헌법은 제6조와 제7조에서 천황의 권능을 규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권능에 따라 천황을 국가의 사의 형성에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천황은 분명히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64] 즉 헌법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천황의 국사행위(권능조화)를 천황이 상징기능의 場인 상징행위로서 국사행위를 ①

63) 左左木笏一 (1976)『國家的象徵』三一書房編輯部編.『天皇制論集』第2輯 三一書房 p.409.
64) 大宮荘策 (1979) 「天皇の法的地位についての疑問」『獨協法學』第12号 p.35.

본래의 형식적 의례적인 행위(대사·공사의 접수, 의식의 거행), ② 각종의 인정행위 (특사·감형 등), ③ 국정행위의 실질적 성격이 존재하지만 다른 국가기관이 실질적 결정을 내리며 단지 천황은 형식적·의례적으로만 하는 행위(법령 등의 공포, 영전의 수여,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장의 임명,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총선거시행의 공시)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65] 오미야는 이러한 천황의 상징기능의 장으로서 행하는 상징행위는 국사행위로서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치적 효과는 국가에 직접 귀속된다고 했다.[66] 이는 천황의 상징행위인 국사행위가 국가의 공인에 의한 공적 지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격을 띄며,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2) 상징천황제의 정치성과 문제점

(1)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이용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이용의 발단은 새 헌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지 겨우 4개월 만인 1947년 9월에 천황이 오키나와를 반영구적인 미군기지로 제공한다는 생각을 맥아더에게 전달한 것에서 비롯된다.[67]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일본의 오키나와제도(諸島)의 '장래에 관한 일본 천황의 견해'라는 외교문서에, 천황은 미·일의 이익을 위해 오키나와를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점령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군사점령은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형태로 25~5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장기대여가 바람직하고, 미국이 오키나와열도(列島)를 항구적으로 점령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납득시키면 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68]

---

65) 江橋崇 (1989),「國事行爲論」『法律時報』第61卷5号 p.63. 천황의 국사행위에 관한 내용은 中村哲 (1974) 「天皇」『天皇制論集』第1輯 三一書房 pp.232~235.

66) 천황의 상징행위를 준 국사행위로 파악하는 반해석(反解釋)개헌론자들도 있다. 이는 천황의 상징행위가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국사행위에 한정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長谷川正安 (1988)「天皇の國史行爲について」『法律時報』第60卷5号 pp.74~75. 横田耕一 (1987)「天皇の公的行爲」『法學セミナー』第32卷5号 pp.36~37. 中村睦男 (1989)「國事行爲ない天皇の公的行爲」『ジュリスト』第９３３号 pp.115~117.

67) 進藤栄一 (1979) 『分割された嶺土-沖繩,千島そして安保』『世界』第401号 pp.45~51.

1962년 10월에는 일본을 국빈 방문한 멕시코 대통령의 환영행사에 참석하여 자위대 의장대로부터 전후 처음으로 경례('받들어 총')를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1964년 9월16일 자위대의 고급간부가 천황을 배알하였을 때 "앞으로도 국방의 중책을 자각하고 한층 분발하라"고[69] 격려하는 등, 이른바 '공적 행위'를 통한 의미 있는 정치활동이 계속된다.

천황의 군사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활동은 1970년대 이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973년 마스하라(增原惠吉) 방위청장관의 '內奏' 때, 자위대의 군사력에 대해 문제삼은 발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內奏사건'이란 당시 다나카(田中角榮) 내각의 방위청장관이던 마스하라가 천황에게 자위대의 현황을 설명했을 때, 천황은 "인근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자위력이 강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왜 문제 삼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나아가 천황은 "일본의 방위문제는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은 중대사이다. 옛 일본군의 나쁜 점은 답습하지 말고 좋은 점은 계승하여 확고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이말을 들은 마스하라 방위청장관은 "방위2법의 심의를 눈앞에 두고 용기가 샘솟습니다."라고 하며,[70] 감격한 것을 두고 벌인 천황의 정치적 개입을 문제 삼은 일련의 논란을 말한다.

전후 1950년대까지 일본 지배구조의 기본축이 천황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본의 사회와 국가의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기업

---

68) 文化評論編輯部編 (1986)『天皇制を問う』新日本出版社 p.418.

69) 長谷川正安 (1976) 『天皇制の法的諸問題』,『法律時報』第48卷4号 pp.73~74. 자위대 고급 간부가 천황을 배알했을 때 천황의 격려발언(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공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놓고 국회에서 행한 가쿠다(角田礼次郎) 내각법제국제1부장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통해서도 천황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천황이 자위대 간부에게 한 격려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에 기초하여 나라를 방위할 임무를 갖고 있는 자위대 간부를 만나 천황폐하가 격려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공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다. 有斐閣編輯部編(1989)『象徵天皇制』『ジュリスト (資料)』No.933 p.296.

70) 마스하라 방위청장관의 사건이란 마스하라가 천황에게 자위대의 역사,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 방위청의 기지문제, 자위대원 모집의 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천황의 정치색 짙은 공적 행위의 발언을 말한다. 전게주 69)의 논문 p.74.

의 강력한 노동자지배와 대미종속이라고 하는 국제적 틀과 상징천황제라는 세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전자인 기본, 즉 기업의 강력한 노동자지배와 대미종속이라는 두 기둥이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인 일본국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자민당정권의 보수지배체제를 존속시켜 온 점이라는 사실이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함께 일본사회의 새로운 권위적 지배가 천황에서 기업으로 옮겨 갔다. 그에 따라 천황제의 정치적 역할도 크게 변함으로써 어디까지나 보수지배체제의 부수적 장치가 되었다. 이는 상징천황의 권위강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카소네(中曾根康) 내각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의 기업지배와 성장을 성립시켜온 대미의존이라는 국제적 틀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점과 이러한 틀을 유지하는데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미종속에서 탈피하여 한층 능동적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구조를 무리하게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롭게 요구되는 지배체제의 구조적 재편에서는 천황제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1980년대의 일련의 보수개혁의 원인이 되며, 이 개혁의 일환으로서 상징천황의 권위강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된다.

이상과 같은 보수개혁의 일환으로서 상징천황제의 적극적 이용을 둘러싼 보수지배체제의 구조적 재편 움직임은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정치적 배경으로 1960~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의 보수정치를 지탱해온 국제적 질서의 동요였다. 이때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질서의 구심점인 미국이 장기간의 무리한 베트남전쟁의 수행에 따른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영향력 감소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군비확장의 요구가 나타나고, 내부적으로는 일본 측에서도 1960~70년대 형태의 정치방식으로 헤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의 위기를 극복한 일본자본의 해외진출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의 세계지배라는 군사

우산이었다. 즉 일본의 해외진출은 거의 정변이나 혁명 또는 전쟁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을 비롯한 모든 자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스스로 자신의 자본을 지킬 수 있는 체제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국내 정치상의 문제로 방위비 증액의 한계와 대미종속에 따른 자위대가 안고 있는 취약성(유사시의 해외파병 불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자민당 보수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관계가 수반되지 않는 일본자본의 국제적 권익보호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선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기반이 약화된 국제적 질서를 뒷받침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자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보수지배층이 노린 것은 그러한 동맹의 틀 안에 자국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자국의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군사적·정치적 힘을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상징천황이 자민당 보수정권에 의한 이익정치의 이용대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 저하는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권위의 저하를 만회하고 나아가서 일본국내에 보수지배체제의 사회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하기 위해서 천황제의 강화가 시도되었다. 전후 보다 다양화되고 세대마다 다른 일본국민들의 천황제에 대한 친근감과 무관심, 그리고 일본적 전통에 대한 애착심과 희박한 감정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천황제적 전통과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자민당 정권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이익정치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대국화 노선을 걷기 위한 자민당 보수지배체제를 포함한 국가재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인물은 나카소네이다.

나카소네는 재임기간 중(1982.11~1987.10)에 자신의 정치이념을 국회답변이나 자민당세미나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표명해왔다. '국제국가 일본의 건설'이라는 정치대국화 노선이나 '전후정치의 총결

산', 그리고 반복된 '천황찬미'가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가 말하는 국제 국가나 전후정치의 총결산의 실제내용은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민당 보수지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치대국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상징천황제의 강화였다. 다시 말하면 자민당 보수정권은 상징천황제의 강화를 통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자본주의 성장을 유지하고, 이를 국제적 틀 속에서 지탱하기 위한 정치대국의 자민당 보수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이용은 1984년 9월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당시에 '선린우호'라든가 '친선'이라는 표면적인 것 외에 미국 레이건 정권의 지상목적인 한·미·일 군사동맹결성이나 불안전한 전두환 정권의 기반강화에도 어김없이 등장[71]한다. 당시 나카소네 수상의 취임 후 2개월도 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회담하고, 40억 달러의 안보원조를 약속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에 접근한다.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과 방미,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은 말하자면 한·미·일 군사동맹결성의 중요한 이벤트가 된 셈이다. 천황은 바로 이러한 이벤트에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만찬석상에서 천황은 36년간의 식민지지배를 '불행한 과거'에 대한 '유감'으로 정리하였으며,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정권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지도하에(…중략)"로 시작하는 정치적 미화발언을 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의 자민당정권을 비롯한 보수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이용은 모두 자신들의 결집과 위기극복 및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천황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대국화 노선에 따라 천황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에 쇼와천황에서 헤이세이천황으로 바뀐 후, 일본의 보수세력은 천황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그 이유

71) 邊九丸(1989)『象徵天皇制の政治的役割-日米安保体制國家づくりとのかかわりで』『季刊科學と思想』第72号pp.1003~1006

는 자민당의 단독정권이 붕괴되고 연립정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집권 자민당은 민족국가 일본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자위대 파병을 위한 헌법 제9조 개헌(군사대국화), UN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미·일 동맹의 강화(정치대국화), 역사왜곡을 통한 침략은폐(군국주의화)를 위해서 천황제 강화를 통한 내셔널리즘의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80년대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대국화의 노선에 따라 일본국가를 개조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72]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과 전 세계에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의 에너지를 한 곳에 결집시켜서 국가의 틀을 개조해야 했다. 그 방법은 일본 국민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창출에 일본 보수정치세력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원천을 천황제 이외의 것으로부터 찾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천황제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을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봄에 나타난 다음의 다케베(武部勤)발언이 잘 나타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간사장인 다케베는 홋카이도의 한 집회에서 "나는 '모든 사물에는 중심이 있는 것이 좋다'는 뜻의 중심귀일이란 말을 좋아한다. 일본은 천황의 나라다. 수좌가 확실히 존재한다."라고[73] 하여 민족주의적 천황관을 드러내 보였다. 또한 자민당이 헌법 전문에 '천황'을 '국가원수'로 '천황'은 '국민통합의 중심적 존재'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천황은 국민통합의 중심적 존재' 라는 문구가 들어간 개헌안 시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며, 그 이유로 일본에서 천황은 역사적·전통적 권위의 보유자

72) 미아자와 전 총리는 전쟁 및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 9조의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이 부분의 논의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나는 일본이 외국에서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다군적군에 들어가 무력행사를 하는 것 역시 문제다"라고 하여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였다『每日新聞』, 2005년 4월1일자 12면

73)『東亞日報』, 2005년 3월7일자 13면(國際面)

이며, 장군과 총리는 기능적·실무적 통합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들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표현을 낳기 위해서라도 천황의 존재를 전문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74]했다.

(2) 상징천황제의 강화내용

① 서훈제도의 부활

생존자 서훈과 같은 일본의 영전제도는 사면 등과 마찬가지로 군주의 은혜와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천황제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크게 활용되었다. 전후 새로운 일본헌법의 제정으로 명치헌법에 명기되어 있던 천황의 서훈권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명치헌법하의 서훈제도는 붕괴되었다. 신헌법 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에는 제 9조의 취지에 부합된 훈장제도가 폐지되고, 이 훈장의 수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던 전몰자 서훈도 없어졌다.[75]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후에 천황제의 부활현상과 같은 의미를 가진 영전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우선 하토야마(鳩山一郎)내각 때에 영전법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천황제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한 반대세력들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46년 각료회의가 결정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1953년에 생존자 서훈을 일부 부활시켰다. 기시 내각에 이어 등장한 이케다 내각은 생존자 서훈에다 전몰자의 서위·서훈(敍位·敍勳)까지 부활시켰다.[76] 게다가 이케다 내각은 영전법 제정에 의한 부활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미리 예상하고, 1963년 7월 12일에 각의 결정방식으로 생존자 서훈을 부활시키고, 이어서 1964년 1월7일에 각의 결정으로 전몰자의 서위·서훈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생존자 서훈이나 전몰자의 서위·서훈은 일본헌법 제7조항에 의거하여 천황의 국사행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부활은 곧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실제 '훈장 등의 傳達

74) 『每日新聞』, 2005년 3월30일자 12면(國際面)
75) 那珂馨 (1973)『勳章の歷史』,雄山閣 p.26.
76) 太田正造 (1981)『國家の構造』ギョウセイ p.192.

式例'를 보면 각 훈장의 등급에 따라 수여방식이 구별되어 있으며, 최고급의 서훈에는 당연히 천황의 '親授'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훈장은 봄(4월 29일), 가을(11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여되는데, 이날은 곧 명치천황과 쇼와천황의 생일로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서훈이나 훈장제도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7]

서훈이나 '사면(恩赦)'이 일반적으로 천황의 권위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천황이 주신다'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된 생존자 서훈이 자민당의 '표밭 일구기'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서훈 부활의 표면적 목적은 상징 천황의 권위 강화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천황의 권위 분배권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는 자민당 정치권력의 기반강화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케다 내각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생존자 서훈을 부활한 것은 상징천황의 권위강화보다는 자민당 보수정치의 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사면제도의 운영

다케시타 내각은 1989년 2월24일 '대상례(大喪禮)'를 거행하기에 앞서 1월25일에 사면제도의 하나인 '政令恩赦'를[78] 단행하였다. 은사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헌법상에 규정된 천황의 공적행위(헌법 제 7조 6항)의 하나이지만 법리상으로는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나 은사에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숨어있다. 왜냐하면 다케시타 내각이 리쿠르트 사건으로 실추된 정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상징천황제의 재출발(히로히토 쇼와천황에서 아키히토 헤이세이천황으로의 대물림)을 하려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은사제도는 전통적으로 원수의 특권으로 지금도 군주의 영예와 영광을 과시하는 비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은사제도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특히 1989년 7월에 참의원 선거(7월23일

77) 渡辺治 (1990)『戰後政治史の中の天皇制』青木書店 p.309.

78) 은사의 종류와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和田英夫(1989)『栄典恩赦の制度とその運用』『ジュリスト』No.933 pp.125~131. 沢登俊雄 (1989)「改元の恩赦制度」『ジュリスト』No.933 pp.183~184.

거행)를 앞두고 있는 자민당 보수정치세력은 은사야 말로 자신들의 세력 결집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마침 천황의 '대상례'를 계기로 발동되는 은사야 말로 선거법위반자를 비롯한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 감옥에 갔던 정치범들을 일제히 사면시켜 줌으로써,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정치 불신을 받고 있던 자민당 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천황이 공적 행위로서 "사면을 해 주신다"는 것이야 말로 부수정치세력의 지배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③ 연호법제화

현재의 천황은 상징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상 정치적 권한도 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천황의 치세를 표시하는 연호를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천황제와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상징은 천황이며 천황제의 상징은 연호라고 하는 견해는 천황제 가운데 주권자인 천황제와 상징적 존재인 천황제를 교묘히 혼동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연호는 주권자인 천황제의 상징일 수는 있어도 상징천황제의 상징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연호법제화 반대여론 추세에도 불구하고 1979년 1월26일 '연호법제화 실현국민회의'가 자민당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자민당의 衆·參議員 80명이 출석하였다. 이 회의는 1월25일 민사당 의원들과도 회의를 하였고 국회의 심의에서 자민·민사·공명당·新자유클럽으로부터 연호법제화에 대한 찬성방침을 얻어낸다. 그 후 7월 20일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를 누르고, 연호는 政令으로 하고, 황위의 계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정한다는 내용의 연호법을 공포하게 된다.[79]

이렇게 하여 성립된 연호법에 따라 관공서의 서류에 연호사용이 강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나 면허증 등 국민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도 연호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연호법은 1989년 1월 7일 쇼와천황의 사망에 따른 신연호(平成)의 제정을 둘러싸고, 또 한번 쟁점화된다. 즉 신연호의 제정 대해서 모든 정당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것은

79) 大石真 (1989)「元號制度の諸問題」『法律時報』第61卷1号 pp.89. 石田圭介(1989)『戰後天皇論の執跡-占領から崩御まで』日本教文社 pp.207~215.

아니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공민당과 민사당은 찬성하고, 사회당과 공산당은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이다.[80] 물론 그 결말은 여당의 생각대로 헤이세이(平成)라는 연호가 제정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신연호 제정에 대하여 여러 정당들의 엇갈린 입장에도 불구하고[81] 자민당 정권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연호법제화를 실시한 이유는 연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황주권주의 시대의 통치자인 천황에 의하여 천황이 주체가 되어 제정된 것이었는데, 1979년의 연호법과 1989년의 신연호는 자민당 정권이라는 내각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에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명치체제하의 황실전범이나 등극령에 정해져 있던 일세일원의 제도는 상징천황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보수체제하에서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지만, '昭和'라는 연호 그 자체는 계속해서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새롭게 부여한 것이 연호법의 제정인 것이다. 1979년 6월 연호법의 제정이 강행된 것은 천황의 고령화로 천황 사후의 연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천황의 권위강화라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연호법제화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천황과 국민의 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천황의 존재를 국민의 의식과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국민이 연호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곳에 항상 천황이 존재하고 그 권위를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호제가 궁극적으로 천황의 존재에 의한 시간(역사)의 단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간

---

80) 신연호 제정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민당의 입장> : 신연호의 제정에 찬성한다. 신연호가 일본인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한다.
<공명당의 입장> : 신연호의 제정에 찬성하고 서력의 병용도 인정한다.
<민사당의 입장> : 신연호의 제정에 찬성한다. 새로운 연호가 국민에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사회당의 입장> : 신연호의 제정에 반대하고 연호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공산당의 입장> : 신연호의 제정에 반대하고 연호사용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有斐閣編 (1989) 「資料集成·象徴天皇制(2)」『ジュリスト』pp.112~113.

81) 上山春平 (1979)『元號と天皇』『中央公論』p.79.

관념에도 천황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82] 결국 연호법제화란 연호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여 천황의 권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시간'이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영역을 직접 지배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3]

④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자민당 보수정권에 의하여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참배가 강행되는 것은 장차 천황의 공식참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자민당이라는 정치권력의 주체가 스스로 천황에게 공식참배의 길을 열어주어 야스쿠니신사의 공적인 복권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는 단순한 정교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神權天皇制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군국주의 일본이 절대 천황제 국가의 체제를 보다 손쉽게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야스쿠니신사의 참배를 강제함으로써 천황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심·복종심을 강화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민당 정치권력 및 보수세력이 지금에 와서 왜 야스쿠니신사의 공적인 복권을 시도하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황과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나카소네 내각 및 그 이후의 자민당 역대 총리들을 비롯한 보수정치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한 경위와 그 의미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는 명치유신 이후에 천황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한 전황측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 신사의 큰 특징은 명치정부가 국민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신도라는 종교와 결합시켜 천황·군·신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제2차세계대전등 연이은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과 진혼을 위한 종교시설로, 천황이 이것을 직접 유족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군국주의를 뿌리내리게 하

82) 山內敏弘 (1987)「象徵天皇制の現狀と憲法」『法律時報』第 59卷6号 p.35.
83) 奧平康弘 (1989)「日本國と內なる天皇制」『世界』第523号 pp.123~124.

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살아 있는 신(現人新)인 천황에게 모든 가치를 일원화한 근대 절대천황제의 원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거의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의식의 차원에서 전몰자의 영혼을 달래는 시설물인 동시에 이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존경과 복종을 강제하는 천황제 권위강화의 수단이었다.[84] '야스쿠니신사의 공식참배=천황에 대한 존경과 복종심의 강요=천황제 이데올로기 공세=천황의 권위강화=천황제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의 형성'이라는 등식을 가능하게 한다.

1985년 8월15일 나카소네(中曾根康弘)수상을 비롯한 많은 각료들이 야스쿠니신사의 공식참배를 강행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하시모토 총리에 이어, 2001년부터 고이즈미 자민당보수연립정권(자유당, 공명당포함)의 총리까지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1980년대 나카소네가 주창한 국제국가 일본, 정치대국화 일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하는 목적이 천황제 강화를 통한 천황제적 이데올로기 확산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 결과 고이즈미를 비롯한 보수세력은 국민들이 거부하지 않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자연스러운 국가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분명한 증거는 2005년 현 자민당이 제안한 헌법개정초안에서 찾을 수 있다.

개헌안은 헌법 제9조를 ①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인정, 해외무력행사 활동 참가허용, 교전권 무제한 허용 및 집단적 자위권 인정 ②현 방어 목적 외 제한된 교전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동맹국 무력분쟁시 개입 가능, 국가기관의 종교 활동 허용,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등 사회적 의례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의 종교활동의 허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85]

---

84) 村上重良 (1982)『現代宗教と民主主義』三省堂 pp.76~83.

85)『세계일보』2005년8월6일자.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그 밖의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高倉一夫 (1983)「平和記念碑という名の慰靈碑」『天皇制研究』vol.7 pp.44~57. 西川重則 (1986)「靖国神社公式參拜强行の波紋(上)『天皇制研究』vol.9 pp.2~17. 西川重則 (1986)「靖国神社公式參拜强行の波紋(下)」『天皇制研究』vol.10 pp.82~99. 丸山照雄 (1982)「靖立神社問題とその背景」『天皇制研究』vol.4 pp.4~20.

자국의 안정된 자위권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9월에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신임총리는 취임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야스쿠니참배를 자제하고 있으나 그의 보수적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개인자격 등을 빌어 참배를 실현시킬 것으로 본다.

(3) 천황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① 메이지헌법과 마찬가지로 신헌법은 제1장에 '천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치원리로서 국민주권을 선언한 것이 신헌법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하는데 반해 헌법 첫머리에 국민주권이 아닌 천황 규정을 두고 국민주권은 그 안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주권이 왜소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황위는 여전히 세습되며 황실전범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계승되는데 황실전범 자체는 메이지기에 성립한 황실전범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 전후에 와서 황실전범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법률이 되기는 했지만, 황실전범의 존재가 인정되고 황위계승이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헌법에서도 여전히 전전의 국체가 연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국사행위[86]에 관한 규정의 애매함: 헌법 제7조의 천황의 국사행위 규정은 천황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행위인지 불분명한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 외에 천황의 공적 행위 중 어디까지를 국사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도 문제로 남아 있다.

③ 천황의 오코토바(お言葉, 천황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말씀)문제: 국회가 소집되면, 개회식에서 천황이 옛 귀족원인 참의원의 특별석에서 인사

86) 예를 들어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해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하여 새로 임명된 대신에게 천황이 임명장을 주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면은 단지 형식적인 의례행위가 아니라 천황이 마치 이들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천황의 권위를 높여주고 신성성을 연출하고 있음.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코토바는 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관례임에도, 일본정부는 이것을 국사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전에 천황이 같은 자리에서 칙어를 내리던 것과 같은 연속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④ 천황이 거행하는 각종 의식: 천황은 국사행위로서 국민을 위해 의식을 거행하는데 종교색이 강한 황실의 신도의식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정부는 그 중 일부를 정부의 판단에 의해 국사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사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 성격을 인정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황실의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정교(政教)분리의 헌법원칙상 정부의 예산으로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례적으로 행하는 천황의 공적인 행위는 사실상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징이라는 말로 정치성이 은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헌법개정문제

(1) 헌법개정논의의 전개과정

신 헌법제정이후 헌법을 둘러싼 논의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신 헌법제정 전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GHQ의 헌법개정의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세의 입장에 있었음에 반하여 야당이 오히려 자유로운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헌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진보파로 불렸던 인사들이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요시다·하토야마 내각의 시기에 있어서는 개헌인가 호헌인가가 정치쟁점이 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일평화협정체결을 계기로 공직 추방자가 정계에 복귀하게 되어 개헌논의와 함께 재군비문제가 국내정치의 쟁점이 되었다. 보수정당과 혁신정당의 갈등과 더불어 자유당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1953년 4월 19일의 제26회 총 선거에 있어서는 재군비문제가 선거의 최대쟁점이 되었으며 자유당(요시다)은 “국력에 상응하여 점진적으로 자위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분당파(分黨派) 자유당(하토야마 자유당)은 헌법 개정과 재군비를 주장하였다. 선거후 양파간의 타협으로 분당파 자유당이 복당하는 조건으로 1954년 자유당 내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54년 12월 하토야먀 내각의 성립과 함께 개헌문제가 정치쟁점이 되었고 하토야마내각은 헌법 9조의 개정에 의한 재군비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5년 2월 선거에서 개헌파는 개헌에 필요한 2/3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동 내각은 2/3의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중의원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개헌추진의 방법이 장기적인 개헌 분위기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한편 1955년 보수합동(保守合同)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은 당 강령에 “현행헌법을 자주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라고 명기하였으며 이전의 헌법조사회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③ 내각 조사회의 시기로서 1957년 8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이 시기는 위의 정치결전의 시기에 비해서 헌법개정논의가 진정된 시기였다. 특히 1960년 기시(岸)내각에서 추진된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싼 국론의 분열상황은 후임인 이케다 수상으로 하여금 정국운영의 핵을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한편 7년간 활동해온 내각 헌법조사회는 1964년 7월 3일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보고서는 적극적 개헌론에서부터 개정반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견이 망라되어 있었다. 명문(明文) 개헌파와 해석(解釋) 개헌파의 대립이 두드러졌으며 이케다, 사토수상도 명문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개헌문제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시기였다.

④ 1970년대 개헌문제를 둘러싼 변화는 이전의 정치문제 회피노선에 대하여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생겼으며 야당은 호헌(護憲)을 당연한 명제

로서 정착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회 내에서 여야백중(與野伯仲)의 의석분포를 유지하여 각 야당은 연합정권의 구상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헌법에 관해서는 호헌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⑤ 1980년 중·참의원(衆·參議員) 동시선거 이후의 시기에서는 선거결과 자민당이 압승함으로서 여야백중의 상황이 해소되어 자민당은 개헌에 관한 태세를 재정비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당 헌법조사회도 전에 비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스즈키 수상은 국회답변에서 자민당이 3분의2 의석을 확보해도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으며, 적극적 개헌론자인 나카소네도 수상취임 후에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민당 압승의 선거결과를 유권자의 '보수회귀' 의식으로 보면서도, 여기에서의 보수는 이데올로기적 보수가 아닌 '생활보수주의'로 분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언론은 헌법논의를 터부시하는 경향을 유지하여 개헌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문제로 되어버린 듯하였다.

그러나 1993년의 정치개혁법안을 둘러싼 당 집행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 이유로 오자와 이치로 그룹의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함으로서, 38년간에 걸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일시 중단되어 호소카와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정권의 중심인 오자와는 자위대의 '국제공헌'등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서 개헌문제는 다시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87]

⑥ 2001년 1월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중·참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고 입법부차원에서 헌법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했다.

헌법 개정은 5년간 행해진 정책의견 수렴의 컨센서스 형성과정을 거쳐

87)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는 항상 정치권 밖의 개헌론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치권 밖의 개헌론자들은 그 성향이 각기 달라 그 주장하는 바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11월 요미우리 신문은 헌법개정시간을 발표하였다. 언론기관이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검토하여 제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이는 당시까지 금기시 되어왔던 헌법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 제9조의 자위대의 지위와 그 활동에 대한 규정을 더 이상 해석개헌에 의존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 작성된 2005년 헌법조사회의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안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절한 시기에 헌법 개정을 실행하려고 한다. 중의원 헌법조사회가 헌법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현행헌법 제9조 평화조항의 개정과 환경권 등의 새로운 인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인정문제와 수상권한의 강화도 논의되었다.

2007년 4월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일본이 헌법 개정에 좀 더 다가서게 되었다. 아베 전 수상은 취임 초기부터 헌법 개정을 내각의 과제로 상정하고 추진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아베의 전략은 국내여론을 환기시키고 해외 국가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입장은 2007년 4월 아베 전 수상의 미국 방문 때 헌법 개정의 방침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일본 헌법은 제96조에서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국회가 지난 2007년 국민투표법(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구체화했다. 국민투표법은 2008년 5월8일 시행에 들어갔다. 헌법심사회는 중의원 100명 이상, 또는 참의원 50명 이상의 이름으로 헌법개정안 초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릴지를 판단하는 국민투표법에 근거를 둔 기구다. 국민투표법의 규정 등에서 유추해 보면 헌법 개정은 2011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넘기려면 중·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 여론도 헌법 9조의 개정에는 반대가 많다. 2010년 5월 국민투표법 시행에 맞춰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7%가 헌법 제9조를 “고치지 않는 게 좋다”고 대답했고, “고치는 쪽이 좋다”는 대답은 24%에 그쳤다. 헌법 개정을 적극 거론했던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치지 않는 게 좋다”는 대답이 49%였으나, 아베 내각 퇴진 뒤

개정반대론이 커졌다. 그러나 9조만이 아닌 헌법 전체로 본다면 “개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47%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39%)를 웃돌았다.

⑦ 민주당 집권 이래 후쿠야마 원전사고를 야기한 미증유의 동일본 대지진과 엔고사태 등의 국내외적인 문제로 총리대신이 하토야마에서 간을 거쳐 현재의 노다에 이르고 있다. 노다총리는 국회 내 기구인 헌법심사회 위원을 선임해 그 명단을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변화로 헌법심사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와 기구가 완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거 공약(메니페스토)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헌법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는 헌법심사회 구성을 회피했다. 간 나오토 내각에서는 3·11 대지진으로 헌법 논의 자체가 없었다. 민주당 안에는 노다 요시히코 신임 총리,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 등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적극적이다. 헌법 9조를 중심에 두지 말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보수적인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 1기생출신에 자위대원의 아들이며 “야스쿠니에 전범은 없다”고 한 그의 말[88]을 상기하면 천황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011년 9월1일 “민주당 야마노이 가즈노리 수석이사가 31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중·참 양원의 민주당 헌법심사회 위원 명단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야당에 밝혔다”며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88) 『中央日報』 2011년 11월15일자14면(國際面)

헌법연표

1946년	11월 일본국 헌법공포
1947년	5월 일본국 헌법 시행
1950년	6월 한국전쟁 시작 8월 경찰예비대 발족
1952년	4월 독립회복 10월 보안대 발족
1954년	7월 자위대 발족 12월 헌법개정을 내세운 하토야마 내각 발족 정부 '자위를 위해 필요상당한 한도의 실력부대는 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견해
1955년	10월 좌우 사회당 통일 11월 보수합동에 의한 자유민주당 결성
1957년	8월 정부 헌법조사회 제1회 총회
1960년	6월 신 안보조약 발효
1964년	7월 헌법조사회 최종 보고서 제출. 개헌 방향성 나오지 않음.
1990년	11월 국제연합평화협력법안(페르시아만 위기에서 자위대의 다국적군 지원 목적)이 폐안
1991년	1월 걸프전쟁 시작 4월 해상자위대 소해정 페르시아 만으로
1992년	6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성립 9월 캄보디아에서의 PKO로서 자위대 파견
1994년	7월 무라야마 수상(사회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는 합헌'이라고 답변
1996년	4월 미일 안보공동선언. 신가이드라인(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작성
1999년	5월 주변사태법 등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성립
2000년	1월 중· 참원 양원에 헌법조사회 설치
2001년	9월 미국 동시 테러 발생 10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성립 11월 해상자위대 보급·호위함 인도양으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시작 7월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 성립
2004년	2월 이라크 부흥지원으로 육상자위대 본대 파견 6월 국민보호법 등 유사관련 7개 법안 성립
2007년	5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통과
2009년	9월 헌법개정공약한 민주당 집권
2011년	10월 헌법심사회 본격 가동(각정당 심사위원 명단제출)

(2) 헌법개정론의 내용

일본은 미·일 동맹 안보체제를 통해 자주의 실익을 얻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미·일 동맹 지상주의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생존전략의 지향점은 생활 국가라는 보통국가가 아니라 과거사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으며 일본의 국력에 걸 맞는 정치·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 현실적 실용주의 방향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개헌안에서는 전쟁을 포기한다는 첫 번째 조문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조항은 개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위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헌법 개정의 방향은 첫째, 천황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천황은 국민통합의 중심으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일본국 원수로 하고 여성천황도 용인한다. 둘째,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의 무력행사에 관하여 평화헌법 1항을 존속시키면서 일본의 안전을 UN의 보편적 집단안전보장 기구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자위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민통제에 의한 것임을 규정한다. 셋째,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방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공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제약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그 개별적인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다. 국민의 권리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기초해서 발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 자유 및 사회의 질서를 존중해야할 의무를 명확히 한다.

징병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긴급사태, 국가와 지방자치제 등에 협력하는 의무를 명기했다. 수상은 방위, 치안, 그리고 재해의 긴급사태를 공포할 수 있고 그때는 자위군이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통치기구에 있어서 현행헌법에서는 내각에 속해있는 행정권이 수상(總理大臣)에게 속한다는 내용을 첨가해 수상의 행정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상에 의해 긴급사태가 선포된 경우, 헌법에 규정된 권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통제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명기

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해 개헌안은 일본 국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로 낮추었으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 유사시 시간과 절차를 요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거수만으로도 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황제와 관련하여 유의 할 것은 천황제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과 여성천황의 인정[89]에 관한 것이지만 후자는 별도로 하고 현재의 규정에서 명문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90]를 부여하게 되면 천황의 정치행위가 합법화 되고 정당화 될 개연성이 분명하며 은폐된 정치행위가 노골화되면서 새로운 군국화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키히토의 차남인 아키시노노미야는 2011년 11월 30일 "종신제의 개정이 필요해졌다."며 종신천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아키히도를 걱정하는 효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상황제부활[91] 등 황실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직결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 주목된다. 결국 헌법 1장의 1조부터 8조까지의 천황에 관한 규정과 9조의 전쟁포기의 규정은 한 세트 속에서 호흡하고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헌법 개정에 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89) 일본 궁내청은 황실전범12조를 개정하여 여성천황이 가능하도록 해 줄것을 노다 요시히코총리에게 요청했다. 아키히도 이후의 손자세대엔 계승자격을 가진 왕족이 히사히토 한명 뿐이다.『中央日報』 2011년 11월26일자(國際面)

90) 현재 일본의 천황은 법률적으로는 일본을 대표하는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는 각국을 순방하는 대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수정치세력이 헌법을 개정하여 천황지위를 원수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천황의 외국방문이 가능해짐으로 정치대국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91)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이전에는 천황이 후계자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되는 길이 있었으나 현행 황실전범은 종신왕을 채택하고 있어 천황이 유고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구체적 규정이 없다.

Ⅲ. 결론

상징천황제는 전전 대일본제국을「통치」한 천황의 존재와 전후의 민주주의를 접목하려고 했던「천황제 민주주의」[92]의 애매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국민주권규정, 천황의 권능규정은 명확하며 애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주권과의 관계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지만, 반세기를 거쳐 어느 정도 상징천황제는 안정되고 국민속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11월 3일 일본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전전의 절대천황제는 상징천황제로 전환(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원리적 전환)되었다.[93] 새로운 일본국헌법에서는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천황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3조는 천황의 국사(國事)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는 천황은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실권없는 군주」,국가적 의례만을 행하는「사교적 군주」라 하더라도 천황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후의 국제여론에서 본다면 극히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일본국에 의한 가혹한 군사지배를 경험한 여러 국가는 천황제를 남긴다고 한다면 일본이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세계지배의 야망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국제여론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다시 세계의 안전과

92)「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면 현대일본은 인민주권과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증한 민주사회이다. 반대로 천황제가 갖는 세습적, 가부장적, 민족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은 비민주적인 가치와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천황제 민주주의(imperal democracy)는 긴장을 잉태하고 있는 혼성개념(hybrid concept)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John W. Dower(1999.3)

93) 「일본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부」의 수립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한 일본은 주권자 천황과 그 의사에 따르는 정부를 근간으로 한 대일본제국헌법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45년 12월의 소위「신도지령」에 기초한 천황(국가)와 신도와의 분리나 46년 1월의 「천황인간선언」등은 종래의 천황제도의 사상적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었으며, 재산세의 징수 등에 의한 황실재산의 해체나 농지개혁은 그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혁을 전제로 해서 정치적 권능을 전혀 갖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만 그 근거를 가지는 상징천황제 및 그것을 포함하는 일본국헌법이 성립한 것이다. 전게주35)의 책 p.15.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헌법 제 9조 전쟁포기 규정[94]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국헌법의 원점을 망각하고 천황의 권위를 높여 천황을 국민의 위에 두고 국민에게 경의를 강제하여「명치헌법천황」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천황제 강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는 제국주의적 대국화의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국화에 필요한 내셔널리즘의 중핵에 천황제를 가져오는 것이 갖는 모순이다. 이것은 국민 속에 전전의 군국주의와 전쟁에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정부가 60~70년대에 선전해온 상징천황의 이데올로기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원래 전후의 헌법과 민주주의 하에서 성장한 국민이 과반수를 점하게 된 상황 하에서 야스쿠니신사·기원절(紀元節)이라고 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종래대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황제를 대신할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심벌이 따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제국주의」적 대국화의 시도는 일본자본이 진출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85년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의 공식참배는 그 직후에 한국·중국으로부터의 강한 비판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케시타(竹下), 가이후(海部), 미야자와(宮澤), 나아가 호소카와(細川)연립정권 그리고 무라야마(村山), 고이즈미(小泉) 현재의 노다정권에 이르기 까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도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의 비판은 여전히 강하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황이나 신사야 말로 일본제국의 침략의 상징이며, 지금 일본이 다시 그와 같은 것을 내세우는 것에 의해 과거의 일본 침략과 현재의 일본의 경제진출을 중복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

94) 中村政則 (1989)『象徴天皇制への道』, 岩波書店 p.207. 中村政則 (1992)『戦後史と象徴天皇』岩波書店 제2장, 제3장

이 계속해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연발하여 사임하였으며, 독일과 달리 일본 정부는 전후책임에 대해 일관해서 애매한 행동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정권이 역사인식에 있어서 훌륭하다든가 일본정부가 독일에 비해 완고하거나 둔감하거나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존 독일정권은 과거 나치독일의 행위를 철저하게 자기비판하고 규탄함에도 불구하고 현존정권의 정당성을 증가시킬 뿐 아픔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것은 전후 독일이 나치의 붕괴와 단절 위에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 국가는 과거의 정권을 타도하고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천황이라고 하는 근간제도는 일관되었으며, 지배계급은 전후국가의 정당성의 중심에 항상 천황을 위치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황제 부활세력 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상징천황제파도 동일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만약 과거의 전쟁책임을 정면에서 인정한다면 바로 전후국가의 정당성, 즉 일본국헌법이 제 1조에서 천황을 여전히 일본국의 상징으로서 위치시키고 있다는 문제성이 가시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후 직후 일본국민은 천황제를 폐지하여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쇼와천황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은 전쟁책임을 묻기보다는 동정이나 경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헌법이 상징천황의 자리를 부여한 것을 만족했다. 상징천황제는 그 후에 대중화되어 가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했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패전 후 일본의 천황제는 점령군이라는 정치지배세력에 이용됨으로써 천황의 지배권력의 정당화 또는 권위 부여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즉 일본의 점령정치에서 공산세력 확대 저지 및 일본사회의 안정과 효율적 통치를 위해 천황제 존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령통치에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일본 역시 항복 · 패전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천황제이다. 공산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고 점령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국제호지'

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일본 지배층의 이해가 일치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상징천황제이다. 상징천황제의 출현 과정에서의 일본시민의 일관된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은 '천황제 지지'와 점령군에의 복종이다. 점령군의 초안에 기초한 일본정부의 초안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은 "일본인은 권력자의 결정에 대해 반대 없이 복종하는 관습이 있다"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복종은 점령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자신이 인정했듯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제쳐 두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신민이 정부의 초안에 대해 복종한 것도, 그것이 천황제 유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일본국헌법상의 상징천황제는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의 효율적 달성과 일본의 국체호지를 전제로 한 일본과 미국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로 탄생한 것으로, 성립자체에 이미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전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후 패전에 대해 천황과 국민은 모두 군국주의자에게 속은 희생자라는 공감대를 조성하여 패전에 따른 천황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비난을 막고 종순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지배층은 민심조작을 하여, 책임의식이 없는 전전의 천황 히로히토가 새로운 헌법 하에서 그 지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상징천황이 정치지배세력에 의해 국민통합의 유지 및 보수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대중조작 등을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효과적 이용을 위해 해석개헌 등으로 천황의 역할 범위를 확대해 그 이용의 폭을 넓혀 왔다. 즉 메이지 시대는 천황의 헌법적 권한을 자제토록하여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오늘날 평화헌법은 헌법적 권한을 확대해석하여 천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천황의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국민의 정치의식 보수적 기반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연출함으로써 보수정권을 장기화를 돕는데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의 공식 참배 역시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보수회귀, 우경화와 관련 있

다. 현대일본정치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외형적으로 천황제, 고이즈미(小泉純一郎)총리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독도 및 북방영토의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에 의한 역사수정 지지(문부성의 교과서검정) 및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의 국기국가법 제정, 자위대의 해외 파견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 현상 중에서 두드러진 것의 하나가 바로 네오내셜리즘의 대두이다.[95] 근대 이래 일본 내셔널리즘의 핵심에 항상 천황제가 자리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네오내셜리즘 운동은 천황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천황의 존재가 배제되거나 경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96] 오히려 다른 국기·국가법 등의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천황을 부각시키지 않고 천황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 역사에 있어 천황제와 천황의 존재는 대체적으로 권력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지배세력의 안정화를 제공하며 국민을 통합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통치자에 불과 하였으며, 천황의 대국민 영향력은 각 시대의 실질적 권력자에 의해 천황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치지배 세력의 천황의 정치적 이용의 근저에는 민중과 천황의 유대를 조작함으로써 지배세력의 안정화와 국가의 목적달성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메이지 시대에는 유신지사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황국사관이나 교육칙어, 명치헌법 등을 통해 천황이미지를 조작했듯이, 오늘날의 정치지배세력도 다양한 천황관련 행사와 국가원수적 행위를 통해 그 이미지를 조성해 갈 수 있다. 물론 전전과 같은 형태의 국가주의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본이 강대국의 하나로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띤 국가목표를 추구하려 할 경우 천황제는 또 다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이용은 곧 천황 권력의 본질이 초월적·상징적·의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징천황이야 말로 초월

95) 최장근 (2003)「현대일본정치의 아이덴티티 모색과 그 방향성」『일본학보』Vol.54 한국일본학회 p.499.
96) 박진우 (2003)「네오내셔널리즘과 상징천황제」『일어일문학』Vol.19 대한일어일문학회 pp.24~25.

적 존재로서 천황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97] 그리고 상징적·의례적 권력을 가진 천황의 정치적 이용의 전제는 만세일계의 역사성을 가진 초월적 권위의 존재에 대한 일본국민의 심층에 놓여 있는 천황존숭의 마음이다. 그러한 천황에 대한 존숭의 마음과 심층의 동경이 권위에의 의지나 집단주의 등의 심리적 기제에 의해 자극되고 조정되는 것이다. 즉 천황의 정치적 이용은 천황권력의 본질이 주도적·전제적 권력이 아닌 수동적·상징적·의례적이라는 것과 일본국민의 천황에 대한 우호적 정서와 일본인의 심리적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역사화 되어온 것이다. 이 관계는 순환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권에 의해 강요되고 조작된 천황관이 일본국민 개개인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국민 전체의 천황관이 형성되고, 국민전체의 천황관은 정치체계 내부의 결정영역에 전달되어, 정책이나 결정으로 옮겨지고, 그러한 정책이나 결정은 권위와 권력을 동반하여 다시 그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전달되어 새로운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지배세력의 일본 천황의 권위나 권력 이용은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정서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용되었다는 말은 곧 천황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말과 같다. 정치지배세력은 지배의 효율과 목적 달성을 위해 천황의 권위나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천황의 신격성을 강화하거나 천황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숭배심을 높여갔다. 정치지배세력의 천황의 권위나 권력 이용은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정서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천황의 원수화를 추진해온 일본의 정치지배세력은 경제대국 일본을 군사대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정치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력집결의 기축을 여전히 천황에게서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과 함께 등장한 신국가주의적 경향의 강화와 내셔널리즘 성향의 만연이 상징천황제의 '국가원수화'로의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

97) 中村政則 (1992)「戰後史と象徵天皇」岩波書店 pp.18~20.

고 있음은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주변국가들에게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이용과 그것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며, 이에 따른 헌법 개정의 진행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 추세와 더불어 네오네셔널리즘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질서 속에서 재정위기 등의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할 시점인 지금,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국수적이고 복고적인 가치로 일본을 몰아가려고 하는 보수 세력이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후에 태어나 민주적 교육을 받은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가치충돌을 통하여 천황제는 한편으로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통합과 내셔널리즘의 중핵으로서 기능하면서 존속할 것으로 본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김용민(2001)「日本天皇制에 關한 硏究 ; 天皇 位相의 歷史的 變化를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김용운(1986) 「 전후 일본 천황제와 일본인의 원형 」『경남대 한국과 국제정치』

노마필드 저/박이엽 역(1995)『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창작과 비평사

박진우(2004) 『근대일본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J&C

_____(1999)「 근대천황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일본사상』, Vol- NO.1, 한국일본사상사학회

_____(1998) 「前後日本의 歷史意識과 象徵天皇制」,한국신학마당, 日本史學會

白雲龍(2007) 『일본천황제의 역사적 변모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13집

_____(1993)「 천황상징성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일본학지』 Vol.13 , 계명대학교 국제연구소 일본연구실

_____(1992)「 전후천황제의 제도적 존재구조와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일본학연보』,4

이상봉(1996)「 일본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 」 『21세기정치학회보』,

이상훈(2003) 「象徵天皇制의 딜레마 - 국민 통합인가 국민 분열인가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정수심(1993)「 일본국 헌법상 상징천황의 지위에 관한 고찰 」,『대전산업대학교논문집』 Vol.10권NO.1

최상룡(1990)「 맥아더의 일본점령과 천황제 」 『아세아 연구』, 83

탁재형(2004)「日本天皇制와 政治意識 -天皇勸力의 本質과 政治的 利用을 中心으로-」 21세기정치학회

함동주(2009)『천황제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이노우에 타츠오(1996) 「 민주적 천황제를 넘어서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법과사회』,13

朝尾直弘외(연민수역 2003) 『새로 쓴 일본사(要說 日本史)』 창작과비평사

飛鳥井雅道(1989) 『天皇と近代日本』 三一書房

石田 雄(2000) 『記憶と忘却の 政治學-同化政策·戰爭責任·集合的記憶』明石書店

淸水睦(1987)「 天皇の憲法上の地位權限と機能 」『日本中央大學白文論文集』 第39卷7号

鈴木正明(2000)『國民國家と天皇制』, 校倉書房

鈴木正幸 著 ;류교열 譯(1998)『근대일본의 천황제』,이산
內閣總理大信官房(1998) 『中會根內閣總理人臣演說集』, 日本廣報協會
藤永辛治(1987)「天皇の地位と權能」『月刊警察』 第6卷11号
宮地政人(1986)「現代反動と天皇制イデオロギ-」『季刊科學思想』 第61号
三輪降(1989)「象徵天皇論 徹底」『法律時報』 第61卷3号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